Vision

“사람 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목 차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 ····· 1

2. 제3기 계획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 3
   1) 제3기 계획 개요 ····· 3
   2) 제3기 계획 중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 4
   3)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 5
   4)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 12

3.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 14
   1)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 14
   2) 2016년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총괄 ····· 15

4.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 18
   1) 중점추진사업 1 : 노인복지안전망 강화 ····· 18
   2) 중점추진사업 2 :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여가 문화 기회 조성 ····· 25
   3) 중점추진사업 3 :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 31
   4) 중점추진사업 4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38
   5) 중점추진사업 5 :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복지문화구현 ····· 46
   6) 중점추진사업 6 : 청소년이 신바람 나는 환경 조성 ····· 56
   7) 중점추진사업 7 : 찾아가는 사례발굴 및 서비스연계지원체계 강화 ····· 64
   8) 중점추진사업 8 :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 72
   9) 중점추진사업 9 : 맞춤형 일을 통한 자활역량 강화 ····· 81
   10) 중점추진사업 10 : 장애인 자립지원강화 ·····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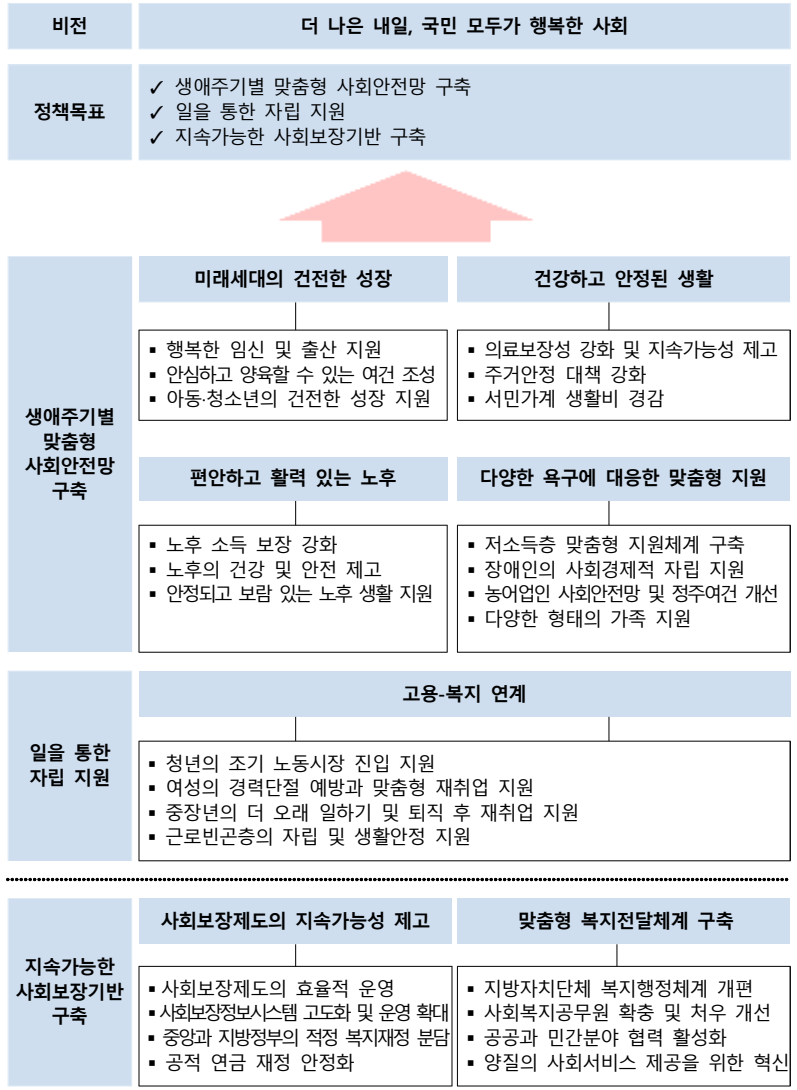
11) 중점추진사업 11 : 무장애와 안전한 복지환경 구축 ····· 95
12) 중점추진사업 12 : 어우러져 존중하는 지역 공동체 조성 ····· 101

5.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 110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방안 ····· 110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112
3)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 ····· 113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114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115
6.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자체 평가계획 ····· 116
1) 평가주체 ····· 116
2) 평가내용 및 방법 ····· 116
3) 평가시기 및 과정 ····· 117
4) 평가결과 활용계획 ····· 117

▣ 첨부. 지역사회보장지표 작성 ····· 118
1) 여건지표(36개) ····· 119
2) 핵심지표 중 영향지표(19개) ····· 121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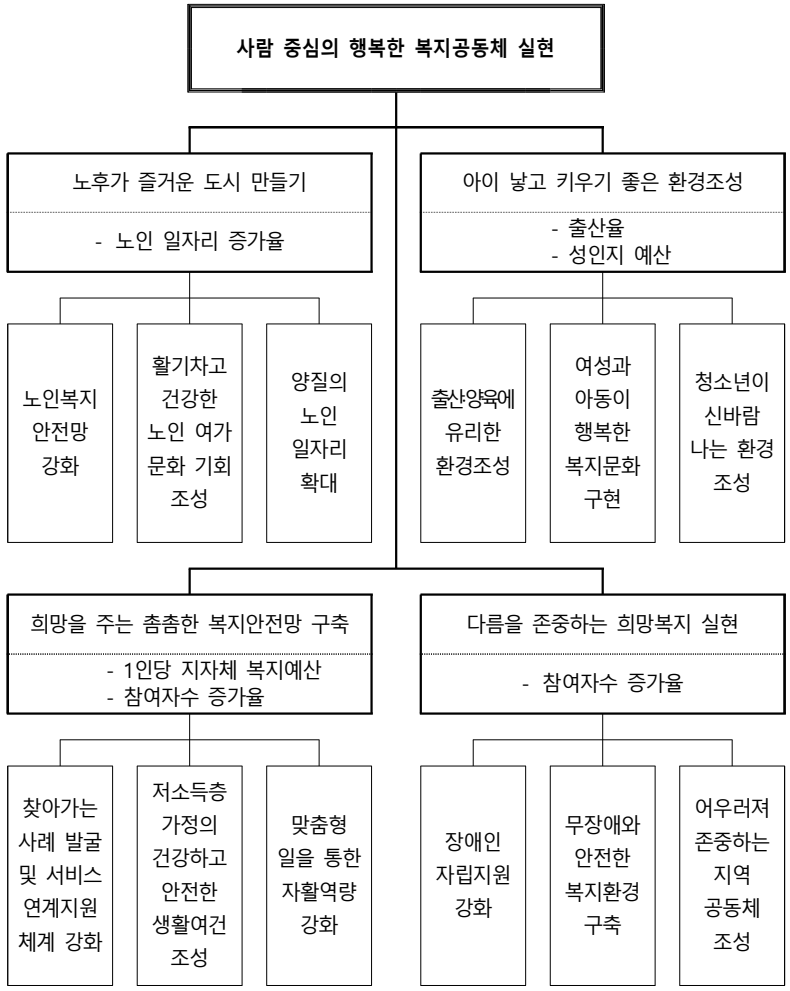


부문	사회보장기본계획		'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람 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정책 목표 및 전략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복지문화 구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비스 <청소년이 신바람 나는 환경 조성> ・맞춤형 프로그램제공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저소득가정의 건강하고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 ・저소득층가정의 주거급여확대 ・현장중심의 희망복지추진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안정되고 보람 있는 노후 생활지원	<노인복지 안전망 강화> ・노인돌봄서비스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 여가문화 기회 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노인고용사업장의 고용촉진지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저소득가정의 건강하고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 ・한부모·조손가정의 맞춤형 복지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돌봄 지원 확대 <어우러져 존중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복지문화 구현>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맞춤형 일을 통한 자활역량 강화> ・자활근로사업 확대 ・노숙인 자립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제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찾아가는 사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체계 강화> ・민·관 협치를 통한 풀뿌리 복지기반 강화 ・저소득가정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사례발굴 및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 커뮤니티 조성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양질의 사회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내용 확인: www.ssc.go.kr(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

2. 제3기 계획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제3기 계획 개요



2) 제3기 계획 중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중점추진사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 설정 성과지표	예산액			
				2015	2016	2017	2018
추진전략 Ⅰ		노후가 즐거운 도시 만들기	노인 일자리 증가율	14,714	16,228	17,630	18,776
중점추진사업 1 노인복지 안전망 강화	A B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도모	노인일자리 증가율	6,893	7,316	7,506	7,710
중점추진사업 2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여가 문화 기회조성	A B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2,128	2,679	3,280	3,621
중점추진사업 3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A B	노인의 사회참여율 제고	노인취업자 수	5,693	6,233	6,844	7,445
추진전략 Ⅱ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출산율,성인지예산	22,784	24,987	25,733	26,407
중점추진사업 4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A,B B A	일·가정양립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어린이집 인증율 서비스이용자 수 사례관리아동 수	11,748	12,096	12,453	12,823
중점추진사업 5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복지문화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성인지 예산	9,538	9,785	10,062	10,255
중점추진사업 6 청소년이 신바람 나는 환경조성	A B	청소년 수련, 여가문화 활동기회 확대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1,498	3,106	3,218	3,329
추진전략 Ⅲ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1인당 지자체 복지예산, 참여자 증가율	13,016	14,042	15,179	16,475
중점추진사업 7 찾아가는 사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체계 강화	A B	취약계층 사례관리를 통한 복합적 복지욕구 해소강화	사례관리 가구 수 및 서비스제공 민간협력 연계수	482	489	499	556
중점추진사업 8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A B	주거급여확대 및 현장 중심 맞춤형복지제공	지원대상자 수	11,302	12,261	13,320	14,485
중점추진사업 9 맞춤형 일은 통한 자활 역량강화		자활기반조성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수, 참여인원수	1,232	1,292	1,360	1,434
추진전략 Ⅳ		다름을 존중하는 희망복지 실현	참여자수 증가율	14,114	14,582	15,601	15,541
중점추진사업 10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A B	자립생활 향상	장애인 소득보장 및 돌봄예산 비중	13,390	13,804	14,219	14,637
중점추진사업 11 무장애와 안전한 복지환경 구축	A B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안전점검 및 교육이수	0	0	0	0
중점추진사업 12 어우러져 존중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A B	다양성 존중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지역의 복지력 회복	수혜자 만족도 및 우울성 척도검사	724	778	842	904

3)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진단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 저출산·고령화 현상 지속에 따라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 아동 등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 연령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노인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특히, 후기노인인구의 증대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결과, 노인에 이어 여성이 2순위로 나타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지역주민의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음. 지역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직·간접적인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또한 가족해체의 증가, 빈곤의 심화 등으로 위기가 급증하여 아동에게 심리 정서적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장애인인 경우에도 지속적인 법정장애유형 확대 및 최근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발달장애인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요구 증대와 함께 향후 장애인구 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도 증가할 전망임
- 최근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로 외국인과 접촉기회가 증대되어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외국인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성으로 대두됨에 따라 다문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문화 가족의 복지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인구 및 면적 현황

- 제주시의 총인구수는 459,876명으로 남자는 총인구의 50.06%인 230,223명이며, 여자는 49.9%로 229,653명임. 인구밀도는 459명으로 한국 전체의 인구밀도 약 486명보다 낮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밀도 287.7명보다 높음. 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3%임
- 제주시의 전체 면적은 978,152㎢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약 52.9%에 해당하며 주거지역 25,697㎢, 상업지역 3,835㎢, 녹지지역 181,421㎢, 계획관리지역 594,357㎢, 농림지역 54,971㎢, 자연환경보전지역 235,656㎢ 으로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음.
- 제주시는 26개(4읍·3면·19동, 96리·449통, 4,129반) 주민센터로 도농어 복합도시로 인구는 노형동이 53,491명으로 가장 많고, 우도면이 1,710명으로 가장 적으며, 면적은 애월읍이 202.16㎢로 가장 크고, 일도1동이 0.31㎢로 가장 작음

< 제주시 인구 및 면적 >

(단위 : 세대, 명)

읍면동명	세대수	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면적
		계	남	여		
계	185,874	459,876	230,223	229,653	56,614	118,267㎢
한림읍	9,072	19,827	10,275	9,552	3,909	91.09㎢
애월읍	13,018	30,944	15,876	15,068	5,362	202.16㎢
구좌읍	6,889	14,746	7,481	7,265	3,631	185.93㎢
조천읍	8,746	21,065	10,829	10,236	3,874	150.64㎢
한경면	4,114	8,516	4,309	4,207	2,279	79.1㎢
추자면	1,134	2,022	1,120	902	577	7.05㎢
우도면	896	1,710	875	835	411	6.18㎢
일도1동	1,842	3,417	1,777	1,640	624	326㎢
일도2동	13,277	36,481	17,880	18,601	4,093	2,180㎢
이도1동	3,528	7,987	3,973	4,014	1,160	0.692㎢
이도2동	19,358	51,565	25,132	26,433	4,461	5.57㎢
삼도1동	5,911	14,684	7,160	7,524	2,136	870㎢
삼도2동	4,433	9,123	4,681	4,442	1,148	830㎢
용담1동	3,789	8,363	4,238	4,125	1,306	611㎢
용담2동	6,580	16,594	8,397	8,197	2,478	4,932㎢
건입동	4,328	10,112	5,211	4,901	1,587	2.53㎢
화북동	9,409	26,050	13,046	13,004	2,407	8,287㎢
삼양동	6,449	17,235	8,782	8,453	1,693	9.53Km²
봉개동	1,280	3,160	1,696	1,464	607	47,342㎢
아라동	9,383	24,123	12,048	12,075	2,355	70.48㎢
오라동	3,881	10,003	5,088	4,915	1,053	28,740㎢
연동	19,132	43,148	21,145	22,003	3,318	12,326㎢
노형동	19,853	53,491	26,198	27,293	3,675	45.24㎢
외도동	6,829	18,699	9,438	9,261	1,587	8,405㎢
이호동	1,551	3,973	2,068	1,905	529	2,558㎢
도두동	1,192	2,838	1,500	1,338	354	4.03㎢

※ 외국인 제외현황임 (10,902명 남/5,845명, 여/5,057명)

○ 지역사회보장환경 변화

- 정치·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보편복지 패러다임 대두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인식에서 점차 복지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복지욕구 다양화로 인해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수요자 맞춤형의 복지서비스 확대가 요구됨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 못되는 위기가정 등의 복지사각지대로 복지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전적·예방적 복지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회공헌 및 나눔 문화 확산 등 민간 복지역량 및 참여가 강화되는 추세로서 민간 복지자원 적극 발굴 및 연계가 요구되며, 공공과 민간의 상호부조적인 통합 복지전달시스템으로의 진화가 필요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과 기부액, 자원봉사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볼 때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9.6%(2015년도)로, 제주시의 재정규모는 1,063,14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88,713백만원, 특별회계 74,433백만원으로 구성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40.3%이며,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의 비율은 51%임

< 제주시 재정현황('16년 예산) >

(단위 : 백만원)

재정현황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중 자체사업예산(%)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063,146	988,713	74,433	398,808 (40.3)	203,598 (51)

○ 복지 대상자 현황

- 제주시의 복지대상자는 142,024명으로 전체인구의 30.8%수준 임
- 읍·면·동별로는 이도이동이 13,247명으로 가장 많고, 우도면이 710명으로 가장 적음

< 제주시 동별 복지대상자 현황 >

(단위 : 명)

읍면동	합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급여대상)					장애인복지		
			계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우선 돌봄 차상위	등록 장애인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계	142,024	11,968	130,056	1,304	3,777	84	681	23,152	3,264	2,461
한림읍	7,706	648	7,058	94	133	5	14	1,417	223	160

읍면동	합 계	기초 수급자	차상위(급여대상)					장애인복지		
			계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우선 돌봄 차상위	등록 장애인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애월읍	11,468	968	10,500	97	211	4	34	1,952	287	193
구좌읍	6,334	376	5,958	61	127	4	106	1,177	194	86
조천읍	7,830	583	7,247	63	249	8	35	1,358	188	129
한경면	3,869	260	3,609	46	83	1	7	774	122	72
추자면	1,030	60	970	46	17	0	67	171	30	21
우도면	710	41	669	5	7	0	1	151	29	10
일도1동	1,306	225	1,081	10	19	2	13	219	35	42
일도2동	9,598	683	8,915	67	249	8	38	1,594	174	128
이도1동	2,348	250	2,098	23	53	0	19	414	58	60
이도2동	13,247	898	12,349	96	821	6	37	1,874	215	151
삼도1동	4,027	348	3,679	24	106	1	13	680	77	66
삼도2동	2,983	390	2,593	26	74	1	13	483	69	75
용담1동	3,001	330	2,671	31	121	2	12	486	73	57
용담2동	5,491	476	5,015	52	141	4	53	914	127	87
건입동	3,564	405	3,159	44	92	2	14	624	68	109
화북동	8,602	845	7,757	75	209	6	11	1,298	220	160
삼양동	6,619	517	6,102	48	172	4	30	850	137	101
봉개동	1,158	93	1,065	18	31	1	2	222	33	17
아라동	8,332	1,024	7,308	108	184	4	18	1,513	229	293
오라동	2,879	181	2,698	22	47	0	3	438	62	39
연동	9,348	724	8,624	66	238	10	60	1,452	189	128
노형동	12,330	976	11,354	110	243	6	49	1,899	271	146
외도동	5,928	465	5,463	45	108	3	23	778	112	87
이호동	1,369	118	1,251	13	19	0	4	240	23	22
도두동	947	84	863	14	23	2	5	174	19	22

※복지정보통계시스템-복지대상자 총괄현황 참고 작성

읍면동	한부모 가족	기초 연금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기 타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유아 학비	가정 위탁 아동	입양 아동	초중고 학생 교육비	사회 서비스 이용권
계	6,389	36,592	8,076	20,785	4,791	1,015	158	11,284	6,243
한림읍	259	2,782	231	611	168	68	1	574	318
애월읍	430	3,545	494	1,323	305	87	13	921	604
구좌읍	154	2,766	151	363	132	25	12	453	147
조천읍	287	2,667	294	747	134	28	14	675	371
한경면	79	1,674	67	247	39	15	0	220	163
추자면	8	510	9	35	22	2	1	28	3
우도면	10	358	16	45	12	1	2	19	3
일도1동	58	413	35	95	21	10	0	85	24
일도2동	486	2,419	545	1,472	468	55	6	852	354
이도1동	90	633	125	278	66	17	0	156	106
이도2동	710	2,484	1,058	2,575	646	101	21	993	561
삼도1동	205	1,035	219	606	139	29	1	341	137
삼도2동	125	901	129	280	98	25	8	189	97
용담1동	186	837	111	272	62	20	0	264	137
용담2동	275	1,589	220	672	102	30	4	489	256
건입동	164	1,031	143	348	112	21	0	263	124
화북동	448	1,763	450	1,545	192	75	6	884	415
삼양동	363	1,230	541	1,421	206	79	5	606	309
봉개동	36	359	24	112	22	9	1	106	72
아라동	307	1,481	588	1,304	363	57	14	512	333
오라동	78	589	273	701	90	12	1	160	183
연동	586	1,674	753	1,725	438	83	18	721	483
노형동	655	2,175	1,044	2,302	711	97	17	1,093	536
외도동	284	1,103	444	1,388	200	56	11	478	343
이호동	66	336	69	172	23	11	1	137	115
도두동	40	238	43	146	20	2	1	65	49

○ 사회복지자원 현황

- 생활시설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정신보건 노숙인	여 성 복 지	한부모 복 지	청소년
시설수	94	22	49	8	4	6	3	2
인 원	3,291	449	2,201	189	287	64	84	17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인 이용시설	정신보건	노숙인	재가노인복지 (장기요양)	경로당	종합사회 복 지 관
시설수	**941**	23	2	1	103	282	7

지역자활 센 터	여성복지 시 설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 센 터	청 소 년 수련시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	7	1	445	43	25	1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보 훈 단 체	장 애 인 단 체	노 인 단 체	여 성 단 체	청 소 년 단 체	보 육 단 체	위 생 단체·협회
단체수	45	7	5	1	14	1	1	16
회원수	71,291	6,007	4,005	28,754	23,564	477	400	8,084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기 타
2,823	726	104	1,478	369	146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 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소분·운반· 판매·보존업	건강기능 식품판매
14,163	10,561	445	1,131	1,160	866

(2) 그 밖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기반으로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의 인적·물적 변동 등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되도록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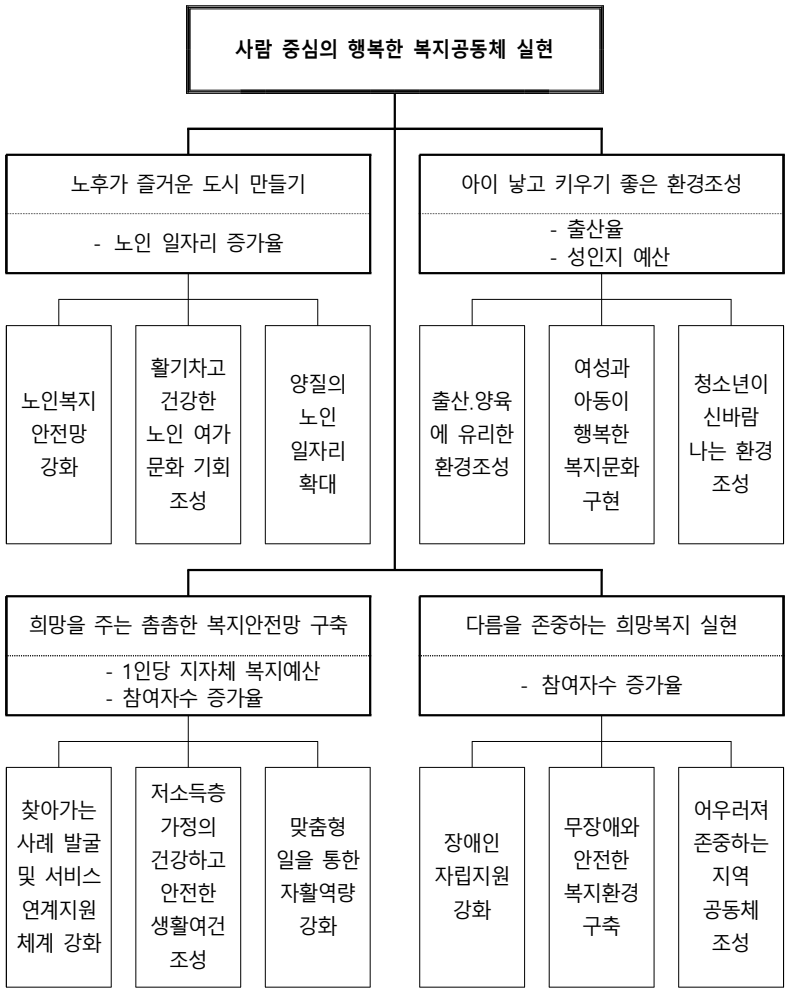
○ 공공전달체계 개선으로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사업과 연계성을 고려가 필요하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에 대한 추진 강화가 고려되어야 함

○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공공부서간의 합의와 협의, 공공-민간의 합의와 협의, 민간-민간의 합의와 협의가 중요함

○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에 중점이던 복지계획의 사회보장분야(건강·문화·교육·주거·고용 등)가 확대 됨.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하며, 기존의 계획서에 작성되었던 보건·복지분야의 사업들을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주민참여를 권장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

4)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1)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사업 개요



(2) 사업변경 내용 및 사유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 고
Ⅰ-1-4	B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 사업	폐지	미시행	②	
Ⅰ-2-6	B	지역밀착형 거점 경로당 활성화 추진	폐지	미시행	②	
Ⅰ-2-35	A	어르신 여가문화 증진 프로그램 지원	신설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여가 문화 기회	①	

※ [변경 사유] 유형 번호

① 수요변화 : 관련 수요 변화에 기인한 사업내용 변경

② 지원 및 예산 변화 : 세부사업과 관련한 자원 및 예산 변경

③ 관련 법 및 정책 변화 전달체계, 법·조례, 상위계획·정책의 변화

④ 전달체계 및 사업 수행기관 변화

⑤ 목표 달성완료 : 사업성과목표의 기 달성으로 사업 변경

⑥ 기타(사유:)

3.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주요 특징

○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 변경

- 2016년 계획은 보건·복지영역의 내용만 포함하던 전년도 복지계획과 달리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으로 복지계획이 보장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주거·교육·환경·문화·건강·안전·보호·돌봄 등 새로운 보장분야의 내용을 보장계획에 포함 하도록 함. 따라서 분야별 중점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계획에 포함 하고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사회보장지표로 이용하여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 할 수 있도록 변화됨

○ 사람 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 제주시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중점을 두고 실현가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체감도 향상

-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한정된 공공재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사업과 연계성을 고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방안에 대한 추진 강화를 고려 함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 지역주민복지욕구 중심

- 제주시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로 어르신(27.53%), 여성(17.4%), 저소득층(13.3%), 장애인(11.7%) 순으로 표출되어 이를 중심으로 분야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음

○ 민·관 협력체계 강화

-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민관협력 정도를 높이고, 2016년도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환경변화의 대응과정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함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등을 검토하여 반영

-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 제주시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의 사업들을 고려하여 지역차원에서 통합성을 유지하고, 제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집행계획과 추진체계로 다양한 참여가 수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함

2) 2016년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총괄

중점추진사업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 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5	2016	2015	2016
추진전략 Ⅰ	노후가 즐거운 도시 만들기	노인 일자리 증가율	14,714	16,228	14,714	16,228
중점추진사업 1 노인복지 안전망 강화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도모	노인일자리 증가율	6,893	7,316	6,893	7,316
중점추진사업 2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여가문화 기회조성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2,128	2,679	2,128	2,679
중점추진사업 3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의 사회참여율 제고	노인취업자수	5,693	6,233	5,693	6,233
추진전략 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출산율, 성인지예산	22,784	24,987	22,784	24,987
중점추진사업 4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어린이집 인증율 서비스이용자 수 사례관리아동 수	11,748	12,096	11,748	12,096
중점추진사업 5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복지문화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성인지 예산	9,538	9,785	9,538	9,785
중점추진사업 6 청소년이 신바람 나는 환경조성	청소년 수련, 여가문화 활동 기획 확대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수	1,498	3,106	1,498	3,106
추진전략 Ⅲ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1인당지자체 복지예산, 참여자수 증가율	13,016	14,042	13,016	14,042
중점추진사업 7 찾아가는 사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체계 강화	취약계층 사례관리를 통한 복합적 복지욕구 해소강화	사례관리 대상 가구수 및 서비스제공 민간협력 회의건수	482	489	482	489
중점추진사업 8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주거급여확대 및 현장중심 맞춤형복지제공	지원 대상 가구	11,302	12,261	11,302	12,261
중점추진사업 9 맞춤형 일은 통한 자활 역량강화	자활기반조성	자활사업 일자리제공 건수, 참여인원수	1,232	1,292	1,232	1,292
추진전략 Ⅳ	다름을 존중하는 희망복지 실현	참여자수 증가율	14,114	14,582	14,114	14,582
중점추진사업 10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자립생활향상	장애인 소득보장 및 돌봄예산 비중	13,390	13,804	13,390	13,804
중점추진사업 11 무장애와 안전한 복지환경 구축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안전점검 및 교육이수	0	0	0	0
중점추진사업 12 어우러져 존중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다양성 존중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지역의 복지력 회복	수혜자 만족도 및 우울성 척도검사	724	778	724	778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Ⅰ-1-1	노인 돌봄 서비스	A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서비스 이용자수	2,971	3,096	1,771	1,935
Ⅰ-1-2	노인복지시설운영	A,B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 만족도	70%	80%	3,671	3,273
Ⅰ-1-3	저소득노인주거비 지원	B	무주택 노인의 생활안정	무주택 노인 주거비 이용자 수	1,101	1,202	641	700
Ⅰ-1-4	세부사업 4	-	사업폐지	-	-	-	-	-
Ⅰ-2-5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A,B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경로당 확충 수	4	7	920	1,810
Ⅰ-2-6	세부사업 6	-	사업폐지	-	-	-	-	-
Ⅰ-3-7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A,B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참여인원	3,119	4,000	6,168	7,950
Ⅰ-3-8	노인고용사업장의 고용 촉진 지원	B	노후 소득보장	노인고용업체 지원인원	278	335	652	804
Ⅰ-3-9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B	공동작업장 운영 내실화	공동작업장 개소 수	2	3	4	6
Ⅱ-4-10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A,B	인증어린이집 확대	인증어린이집 개소 수	393	395	19,314	21,776
Ⅱ-4-11	다양한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B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수	6,266	6,800	300	300
Ⅱ-4-12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A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아동 수	420	440	327	329
Ⅱ-5-13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B	여성역량강화사업 참여 확대	여성대학 참여자 수	9개사업 /80명	8개사업 /80명	171	139
Ⅱ-5-1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비스	A	개별 돌봄 서비스 활성화	아이 돌봄 이용자 수	34,577	35,268	10,281	11,043
Ⅱ-5-15	피해여성 보호지원	A	피해여성보호 지원 강화	1인당 지원 예산액	29	28	1,896	3,129
Ⅱ-6-16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A,B	청소년의 자율적 역량개발 및 체험중심 수련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수	44,309	45,000	418,706	471,533
Ⅱ-6-17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환경개선	A	청소년이 선호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활동 공간 제공	시설기능보강 시설 수	7	5	3,050	925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Ⅱ-6-18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자립기반마련	A,B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증가	쉼터 이용자 수	2,587	2,700	296	328
Ⅲ-7-19	통합사례관리 강화	A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안정화	통합사례관리 회의 개최 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실적	18 280	20 390	319	266
Ⅲ-7-20	지역 자원을 연계한 나눔 문화 확산	B	나눔 문화 활성화	후원자 수	6,000	6,300	123	155
Ⅲ-7-21	민관 협치를 통한 풀뿌리 복지기반 강화	B	민관 협력 및 지역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156	200	270	288
Ⅲ-8-22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급여 확대	A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수혜자 증가율	7,994	8,400	10,864	10,590
Ⅲ-8-23	현장 중심의 희망복지 추진	A,B	위기가구 발굴, 빈곤층 민생안정지원	수혜자 증가율	629	733	775	624
Ⅲ-8-24	한부모, 조손가정의 맞춤형 복지확대	A,B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1인당 지원 금액	80	82	3,879	3,365
Ⅲ-9-25	자활 근로사업 확대	A	맞춤형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자활 참여자 수	730	745	644,722	602,380
Ⅲ-9-26	노숙인 자립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확대	B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	13.2	8.3	1,270	1,373
Ⅳ-10-27	장애인 소득보장	A	저소득 장애인가구 생활안정 도모	수급율	3,400	3,500	8,002	8,113
Ⅳ-10-28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A,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	548	1,100	4,473	4,635
Ⅳ-10-29	장애인 돌봄 지원확대	A	1급 등록 장애인 중 25% 이상 신청	활동지원 신청율	530	600	6,291	7,139
Ⅳ-11-30	제주형 무장애건물 인증제 실시	B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구성	위원회 참여인원	0	3	-	-
Ⅳ-11-31	안전한 복지시설 운영	B	안전한 복지환경 구축	참여자 수	83	90	-	-
Ⅳ-12-32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A,B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참여자수	7,445	7,668	741	788
Ⅳ-12-33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	B	북한이탈주민이 안정된 정착	우울증 척도 감소율	20%	10%	10	11
Ⅳ-12-34	복지마을 만들기	B	복지공동체 구현	복지마을 참여 수 -	1	3	-	-
Ⅱ-2-35	어르신 여가 문화증진 프로그램 지원	A	어르신 여가문화증진 프로그램지원	프로그램참여자수	290	300	417	450

4.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1) 중점추진사업 1 : 노인복지 안전망 강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제주시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2015년 12월말 기준) 459,876명 가운데 12.4%인 56,914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령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 연도별 노인인구 변화 추이 (단위 : 명)

연도별	제주시 전체인구	노인비율(%)	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남	여
2015	459,876	12.4	56,914	22,973	33,941
2014	447,789	12.1	54,334	21,674	32,660
2013	445,457	11.7	52,369	20,679	31,690
2012	435,413	11.5	50,099	19,487	30,612

○ 노인부부가구 및 독거노인의 증가로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가족의 돌봄 기능은 약화 되고 있음

○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이 필요하고 요보호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서비스, 안전 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이 필요함

○ 노인관련 시설은 재가시설 15개소, 입소시설 47개소, 양로시설 2개소에 2,762명이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으며, 점차 장기요양기관의 입소 및 재가시설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 관련 이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 사업 목적

○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 급증과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부양능력이 약화에 따른 노인 복지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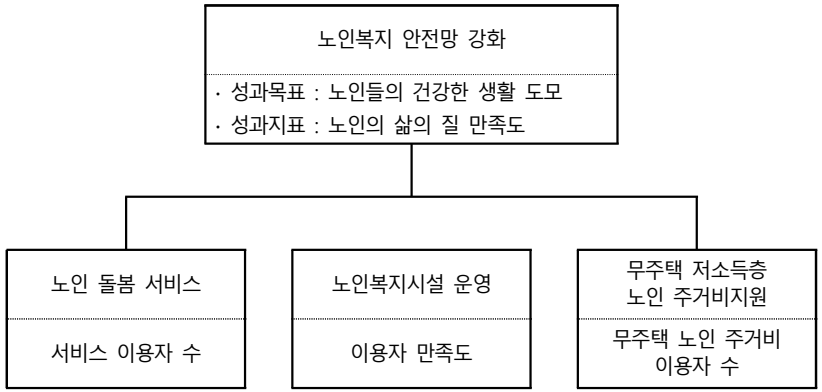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 어르신에 대한 계속적 보호,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 인프라 확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에 주거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생활안정 도모

(3) 사업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4) 사업내용



(5) 그 밖에 사항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I-1	노인복지안전망 강화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 도모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6,083	5,908
I-1-1	노인 돌봄 서비스	A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서비스 이용자수	2,971	3,096	1,771	1,935
I-1-2	노인복지시설 운영	AB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 만족도	70%	80%	3,671	3,273
I-1-3	저소득노인 주거비 지원	B	무주택 노인의 생활안정	무주택 노인 주거비 이용자 수	1,101	1,202	641	700
I-1-4	세부사업 4	-	사업폐지	-	-	-	-	-

Ⅰ-1-1 노인돌봄서비스 [보편/지역/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홀로 사는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가사·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안전 확인, 생활교육, 소득보장, 맞춤서비스를 연계 추진함

(2) 사업 목적

-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 급증과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부양능력이 약화에 따른 노인 복지 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단기가사서비스(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부부모두 만 75세 이상인 노인 부부가구 중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등을 받은 어르신)
- 사업 내용 :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 생활교육,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 사업 추진체계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회보장정보원(노인돌봄종합서비스 위탁기관),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14개소)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서비스 이용자 수 (전년도 대비)	2,971	3,096	이용인원/ 목표인원x100	취약노인 지원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	시스템 활용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3,082	3,096	▽ 0.45
사업비 (백만원)	계	1,771	1,935	▽ 9.2
	국비	1,240	1,335	▽ 7.66
	・일반회계	1,240	1,335	
	・특별회계 (회계명:)			
	・기금 (기금명:)			
	지방비	531	580	▽ 9.22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제주시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제공기관 및 독거노인원스톱 지원센터 현장점검	1회	3분기
제주시	간담회(평가회의)	1회	년 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계)	담당	문명숙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541
		담당자	이영수 (복지8급)		064) 728-2542

Ⅰ-1-2 노인복지 지설 운영 [보편/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어르신의 생활환경·건강상태를 고려한 품격 높은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필요
- 노인복지시설 현황

합 계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입소시설		재가시설			
개소	입소·이용자	개소	입소자	개소	이용자	개소	입소자
64	2,762	47	2,194	15	491	2	77

※ 재가시설 이용자수는 요양, 목욕, 간호 모두 이용함에 따라 중복자수 포함한 인원임

(2) 사업 목적

-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 어르신에 대한 계속적 보호,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 인프라 확충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8조(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 대한 요양비용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처우개선)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① 등급외자 지원 :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 하던 등급외자(노인요양시설 7개소, 방문요양 7개소)

② 종사자 처우개선 : 비영리법인 시설 종사자 39개소 1,000명

③ 기능보강사업 : 노인복지시설

- 사업 내용

①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및 방문요양사업(입소자 입소비용지원,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시 운영비 지원)

②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인당 15만 ~ 20만)

③ 기능보강 지원 사업 : 시설 증축, 장비보강 등 지원

(증개축-2개소 433백만원, 개보수-2개소 72백만원, 지방보조사업 157백만원)

- 사업 추진체계 : 자체재원(등급외자지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국비지원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국비 50%)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이용자 만족도	70%	80%	(등급외자 지원대상×만족율)+(기능보강 시설 입소 자수×만족율)/2	설문지	설문분석
종사자 만족도	-	80%	종사자×만족율	설문지	설문분석

※ 등급외자 지원 사업은 '08.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던 자를 계속 보호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노인 장기요양등급 취득·전출·사망 등으로 대상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1,206 (등급외자 지원 인원 +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자)	1,223 (등급외자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4%
사업비 (백만원)	계	3,671	3,273	△ 92.62%
	국비	339	25	
	• 일반회계	339	25	
	• 특별회계(회계명:)			
	• 기금(기금명:)			
	지방비	3,332	3,248	△ 2.52%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제주시	사업대상 설문	년 1회	연말
제주시	현장점검	년1회	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계)	담당	문명숙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541
		담당자	고대호 (복지9급)		064) 728-2543

Ⅰ-1-3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 (지역/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무주택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2) 사업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201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저소득 노인 지원경비)

(4) 사업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중 만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400~700천원 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무주택노인 주거비 이용자수	1,101	1,202	예산대비 이용자수	예산서	온나라문서 및 이호조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1,101	1,202	9
사업비 (백만원)	계	641	700	9
	국비	-	-	
	⋆일반회계	-	-	
	⋆특별회계 (회계명:)	-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641	700	9
	기타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 계획 없음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경로복지계)	담당	김동익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491
		담당자	김완균 (공무직)		064) 728-2495

2) 중점추진사업 2 :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여가문화 기회조성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노년 인구는 증가하여 연금, 의료비 등 노년 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노인 소외, 빈곤, 질병 등의 노인 문제도 나타남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산 장려 정책 실시, 정년 연장과 재취업 지원 등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시설 확충과 실버산업 육성이 필요

○ 제주시 읍면동 경로당 현황

읍면동	총인구수	65세이상 노인 수	경로당 수	비고
계	**459,876명**	**56,914명(12.4%)**	**282개소**	
한림읍	19,827	3,909 (19.7)	23	
애월읍	30,944	5,362 (17.3)	33	
구좌읍	14,746	3,631 (24.6)	18	
조천읍	21,065	3,874 (18.4)	25	
한경면	8,516	2,279(26.8)	21	
추자면	2,022	577 (28.5)	6	
우도면	1,710	411 (24)	2	
일도1동	3,417	624 (18.3)	2	
일도2동	36,481	4,093 (11.2)	15	
이도1동	7,987	1,160 (14.5)	3	
이도2동	51,565	4,461 (8.7)	15	
삼도1동	14,684	2,136 (14.5)	5	
삼도2동	9,123	1,448 (15.8)	2	
용담1동	8,363	1,306 (15.6)	2	
용담2동	16,594	2,478 (14.9)	11	
건입동	10,112	1,587 (15.7)	3	
화북동	26,050	2,407 (9.2)	13	
삼양동	17,235	1,693 (9.8)	7	
봉개동	3,160	607 (19.2)	5	
아라동	24,123	2,355 (9.8)	18	
오라동	10,003	1,053 (10.5)	7	
연동	43,148	3,318 (7.7)	7	
노형동	53,491	3,675 (6.9)	21	
외도동	18,699	1,587 (8.5)	10	
이호동	3,973	529 (13.3)	4	
도두동	2,838	354 (12.5)	4	

(2) 사업 목적

○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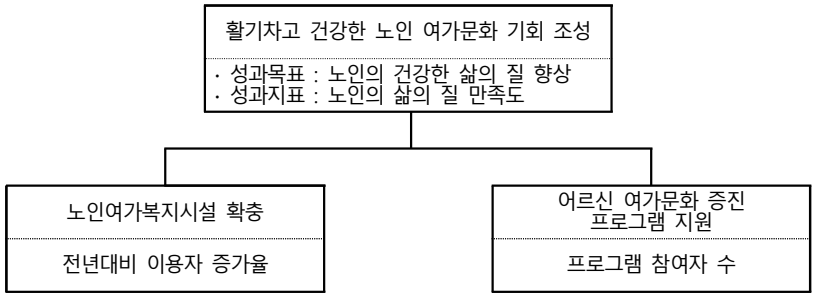
○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어르신 여가문화 증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제공

(3) 사업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보건의료기본법

(4) 사업내용

- 사업 대상 및 인원 :
- 사업 추진체계 :



(5) 그 밖에 사항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I-2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 여가문화 기회 조성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1,337	2,260
I-2-4	세부사업 4		사업폐지	-	-	-	-	-
I-2-5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A,B	노인여가 복지 시설 운영 활성화	경로당 확충 수 노인 천명당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가시간	4	7	920	1,810
I-2-6	세부사업 6		사업폐지	-	-	-	-	-
I-2-35	어르신 여가 문화 증진프로그램지원	B	어르신의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	프로그램 참여자수	290	300	417	450

I-2-5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보편/지역/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건물 증축으로 낙후된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 경로당 신축으로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제공
- 제주시 경로당 현황은 읍면지역에 128개소와 동지역에 154개소가 설치되었음

읍 면 동 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23	33	18	25	21	6	2	2	15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15	5	2	2	11	3	13	7	5
이도1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계**
3	18	7	7	21	10	4	4	**282**

(2) 사업 목적

-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 공간 확보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조례 제6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신축 6개소(고산2리 경로당, 협재리 경로당, 구중경로당, 혜성무지개타운 경로당, 연동 동부경로당, 연동 홀천경로당), 증축 1개소(아라동 염광아파트 경로당) 증축 1개소(아라동 염광아파트 경로당)
- 사업 내용 : 한경면, 아라동에 예산 재배정 및 읍면동 예산사업으로 추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경로당 확충수	4	7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4	7	
사업비 (백만원)	계	920	1,810	
	국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920	1,81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	2	반기
이용자 간담회	현장방문	2	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경로복지계)	담당	김동익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491
		담당자	김나현 (행정9급)		064) 728-2494

Ⅰ-2-35 어르신 여가문화 증진 프로그램 지원 [지역/신규]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수요자 중심의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 사업 목적

- 어르신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유지·향상시킴으로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절감 및 삶의 질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300명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도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노인
- 사업 내용 : 어르신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유지·향상 시키는 다양한 노인대상 여가활동 서비스 제공
  (미술, 음악, 체육, 공예활동, 실버 레크레이션 등)
- 사업 추진체계 :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이용자 선정(읍·면·동 주민센터) → 이용자 통지(시청) → 서비스 이용(해당 제공기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서비스 이용자 수	290	340	전년대비 이용자 증가율	전자바우처 시스템	전자바우처 시스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290	340	17.2% 증가
사업비 (백만원)	계	417	450	9.7% 증가
	국비	292	315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125	13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실무분과	모니터링	연2회	상·하반기
실무협의체	모니터링 및 평가	연2회	상·하반기
대표협의체	모니터링 및 제안, 심사	연2회	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사회서비스계)	담당	김태백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581
		담당자	고영림 (복지7급))		064) 728-2582

3) 중점추진사업 3 :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1) 추진 배경 및 경과

○ 2015년 12월 말 기준 제주시전체 인구 459,876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남자 22,973명, 여자 33,641명으로 총 56,614명이고 전체 인구에 12.3%임

○ 노인인구의 증가, 고령화, 핵가족화, 자녀의 부양 감소 등으로 인한 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또한 노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퇴직한 노년층에게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내 기업과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발굴이 필요

○ 제주시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 내 기업일자리 확대, 시장진입형 일자리 및 공익형 일자리 확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등을 통한 양질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확충이 절실함

(2) 사업 목적

○ 노인의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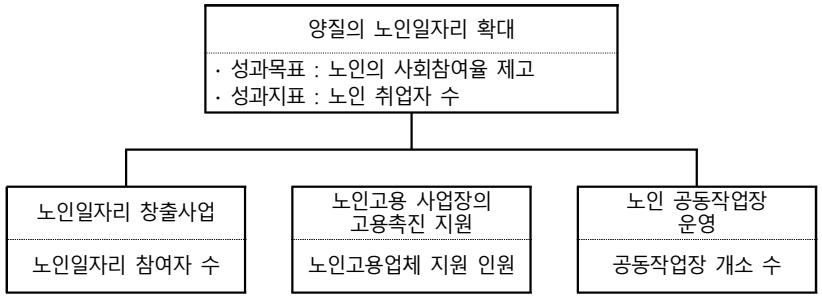
○ 일자리 희망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충 및 활기찬 노후 생활지원

○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도내 영세(중소)업체 지원 보호와 고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

(3) 사업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4) 사업내용



(5) 그 밖에 사항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Ⅰ-3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의 사회참여율 제고	노인 취업자 수			6,824	8,760
Ⅰ-3-7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AB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참여인원	3,119	4,000	6,168	7,950
Ⅰ-3-8	노인고용사업장의 고용 촉진 지원	B	노후 소득보장	노인고용업체 지원인원	278	335	652	804
Ⅰ-3-9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B	공동작업장 운영 내실화	공동작업장 개소 수	2	3	4	6

Ⅰ-3-7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보편/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2015년 12월 말 기준 제주시전체 인구 459,876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6,614명으로 전체 인구에 12.3%임
- 퇴직한 노년층에게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내 기업과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발굴
-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인력뱅크를 운영하여 어르신 일자리 기반 마련

(2) 사업 목적

- 노인의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32개 사업 4,000명
- 사업 내용 : 노노케어, 공익질서지킴이, 환경지킴이 등

<공익형 노인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 사업내용 : 공익질서지킴이, 시설별 문화재 관리 등
- 근무시간 : 1일 2~3시간/월 32시간(9개월) 월 200천원

<실버선생님 노인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 사업내용 : 초등학교 인성교육 효 강의 및 제주어 동화구연 교육
- 근무시간 : 1일 2시간/월 32시간(9개월)/월250천원

<민간위탁 노인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 사업기간/모집인원 : 2016. 1. 18. ~ 12. 31./ 2,216명
  * 민간위탁기관 공모 후 선정
- 사업내용 : 도서관 사서도우미 등 사회공헌형, 시니어손맛집 등 시장진입형
- 근무시간 : 1일 2~4시간/월 20~36시간/월 200천원

- 사업 추진체계

·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 제주시니어클럽 외 3개 단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노인일자리 참여인원	3,119	4,000	전년대비 증가율	온나라문서 및 이호조	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3,119	4,000	28.2
사업비 (백만원)	계	6,168	7,949	28.2
	국비	3,084	3,974.5	28.2
	• 일반회계	3,084	3,974.5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3,084,037	3,974.5	28.2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모니터링	2	반기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간담회	2	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경로복지계)	계장	김동익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491
		담당	김상국 (행정7급)		064) 728-2492

Ⅰ-3-8 노인고용 사업장의 고용촉진 지원 [지역/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2) 사업 목적

-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도내영세(중소)업체 지원 보호와 노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사업체로써,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4대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체
- 사업 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고용 1개업체당 5인 이내 (월1,000천원)한도 내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 조건
  - 사업주는 65세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은 예금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근무일수 :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원칙으로 하되,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일수는 계약에 의함
    ※ 단, 격일제, 3교대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만 충족되면 지원.
  - 보수수준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급하되 월 보수액이 최저 723,600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최저임금 : 시간급 6,030원, 일급(8시간기준) 48,240원(2016년 기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노인고용업체 지원 인원 증가	278	335	전년대비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율	예산서	온나라 문서 및 이호조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278	335	20
사업비 (백만원)	계	652	804	20
	국비	-	-	-
	•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회계명:)	-	-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652	804	20
	기타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 계획 없음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경로복지계)	담당	김동익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491
		담당자	김완균 (공무직)		064) 728-2495

Ⅰ-3-9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지역/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소외받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공동작업을 유도하여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도모

(2) 사업 목적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소일거리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조례 제6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지원 읍면동 3개소(1개소 당 2,000천원 지원)
- 사업 내용 : 공동작업에 필요한 물품(재료) 등을 시에서 지원해주면 각 경로당은 지역적 특성 및 어르신에 적합한 사업을 하여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공동작업장 개소 수	2	3	전년대비 증가율	내부문서	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개소)		2	3	50 %
사업비 (백만원)	계	4	6	50 %
	국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4	6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	2	반기
간담회	현장방문	1	4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경로복지계)	담당	김동익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491
		담당자	김나현 (행정9급)		064) 728-2494

4) 중점추진사업 4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 구현을 위해 제주시 관내 445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안전, 위생, 건강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시설보강, 시설확충,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및 보육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정규 보육시간 외 추가보육을 원하는 다양한 수요자 욕구를 반영하여 양육을 가정 내 책임에서 사회적으로 함께 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함

○ 현재 제주시내 관내 공립 어린이집 15개소, 법인외 어린이집 67개소, 직장어린이집 11개소, 민간어린이집 221개소, 가정어린이집 131개소로 총 445개소에 영유아 20,945명이 이용하고 종사자 4,370명이 근무하고 있음

○ 제주시 어린이집 현황

유 형 별(개소)						보육정원 (명)	보육현원 (명)	종사자 (명)
계	공립	법인(외)	직장	민간	가정			
445	15	67	11	221	131	25,104	20,945	4,370

○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연도별	전체 어린이집	인증 유지 어린이집	인증율
2015	445	393	88%
2014	465	387	83%
2013	468	341	73%

※평가지표 : 6개영역 70개 항목(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 드림스타트 년도 별 운영 현황

연 도	내 용
2007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지역 확정(1월) · 희망스타트센터 개소(용담2동 주민센터 내, 5월)
2008	· 사업 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변경 (5월)
2012	· 사업지역을 용담 1·2동에서 삼도2동까지 확대
2013	· 사업지역을 용담 1·2동, 삼도2동에서 일부 동지역 확대
2014	· 사업지역을 전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

(2) 사업 목적

○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통한 보육품질 향상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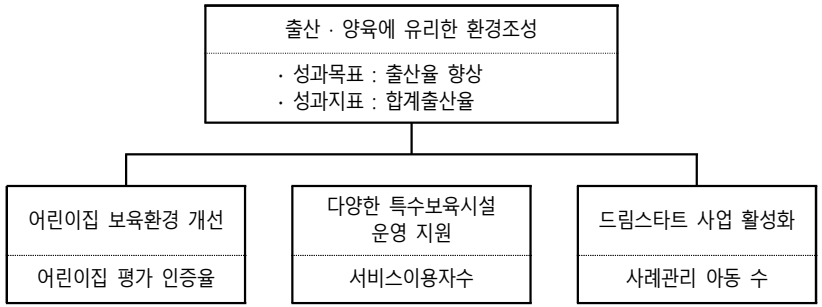
○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특수 어린이집운영을 통해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조성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3) 사업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드림스타트사업지침

(4) 사업내용



(5) 그 밖에 사항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Ⅱ-4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율 향상	합계 출산율			19,941	22,405
Ⅱ-4-10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AB	인증어린이집 확대	인증어린이집 개소 수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393	395	19,314	21,776
Ⅱ-4-11	다양한 특수보육 시설운영지원	B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수	6,266	6,800	300	300
Ⅱ-4-12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A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아동 수	420	480	327	329

Ⅱ-4-10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보편/지역/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 구현을 위해 안전, 위생, 건강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시설보강, 시설확충,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및 보육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제주시내 어린이집 현황은 5개 유형에 44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현황은 20,945명이고 종사자는 4,370명임
- 제주 어린이집 445곳 중 393곳이 2015년 평가 인증을 받아 인증율은 88%로 2014년 83%로에 비해 5% 인상되었음

(2) 사업 목적

-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보육품질 향상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 445개소 및 보육교직원
- 사업 내용 : 어린이집 환경개선(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명),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명)
- 사업 추진체계
  - · 어린이집환경개선 : 여성가족과 사업공모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여성가족과
  -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 위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인증어린이집 개소 수	393	395	인증어린이집 개소 수	문서	사회보장시스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수)		393	395	0.5%
사업비 (백만원)	계	19,314	21,776	12.7%
	국비	2,413	2,236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16,901	19,54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여성가족과	설문기법	환경개선 만족도 설문	사업종료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내부슈퍼비전	1회	3분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보육계)	계장	김미순 (복지6급)	전화 번호	064-728-2591
		담당	김숙현 (복지8급)		064-728-2592

Ⅱ-4-11 다양한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 지역/지속 〕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 취학 전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등으로 나타남
- 정규 보육시간 외 추가보육을 원하는 다양한 양육자의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양육을 가정 내 책임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가 함께 키우는 분위기 조성
- 특수어린이집 현황

계	영아전담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장애아 전 문	장애아 통 합	방과후
292	10	189	2	61	3	22	5

(2) 사업 목적

- 보호자의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 및 맞벌이 가정 등 보육수요에 걸맞은 특수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특수보육지정시설 및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288개소 20,941명
- 사업 내용 : 특수어린이집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여성가족과 추진, 어린이집 연합회와 보육정보센터 연계

구분	시설정의
영아전담어린이집	영아(0세-2세)를 전담하여 보육하는 시설
시간연장어린이집	기준보육시간(07:00 ~ 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4시간어린이집	24시간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휴일어린이집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아를 12명이상 보육하는 시설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아를 3명이상 보육하는 시설
방과후어린이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서비스이용자수	6,266	6,800	전년대비 이용자수	지급내역, 정산서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6,266	6,800	8.52%
사업비 (백만원)	계	300	300	
	국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300	300	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여성가족과	사업대상설명	년1회	3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내부슈퍼비전	년1회	3분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보육계)	계장	김미순 (복지6급)	전화 번호	064-728-2591
		담당	김숙현 (복지8급)		064-728-2592

Ⅱ-4-12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보편/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여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로 개인의 능력 향상 및 기회의 균등을 보장함
- 2007년 희망스타트센터를 개소하여 2012년 용담1·2동과 삼도2동 서비스 제공, 2013년에는 일부 동지역까지 확대, 2014년부터는 사업지역을 전체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 사업 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능력 향상 및 기회의 균등을 보장함

(3)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드림스타트사업지침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취약계층 0세(임산부) ~ 만12세 아동 440명
- 사업 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복지·보호·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사업 추진체계
  -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서비스지원, 예산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관리 자문
  -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부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기능 강화로 서비스 등 정보공유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영역별 전문가 슈퍼바이저 체계 구축으로 사례개입 전략, 서비스기획, 자원관리 등 자문 및 지도 등 로 사례관리업무능력 향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사례관리 아동수	420	440	사례관리 아동 증감율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자료추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420	440	14.2%
사업비 (백만원)	계	327	329	0.61%
	국비	300	300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기금 (기금명:)			
	지방비	27	29	7.4%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설문	만족도	년 4 회	프로그램종료 시
내부 슈퍼비전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	년 1회	3분기
평가회의	사업 종료 시 평가회의	년 1회	사업종료 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아동드림스타트계)	담당	김지경 (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28-2681
		담당자	고애숙 (사무운영7급)		064) 728-2691

5) 중점추진사업 5 :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복지문화 구현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진취적·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역량강화 사업지원 필요

○ 민·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통문화 조성

○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주시여성대학 운영 사업을 1999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 1,247명의 수료생을 배출, 총 453백만원 지원

○ 현재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단체, 6,222명이 등록되어 있고 제주시에는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사업 2015년 14개 사업 120백만원 집행

○ 맞벌이 가족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으로 인해 시설 보육 외 대체적인 양육 지원 체계가 부족한 현실임

○ 아동연령, 부모취업여부, 삶의 방식 등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다양한 수요자 유형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보충적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해마다 여성폭력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적절한 상담서비스, 치료지원, 보호시설 입소 연계 등의 서비스 수요증대에 대응하여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소, 여성자활지원센터 1개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공급과 각 기관 간 유기적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제주시 내 여성복지시설 현황

구분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여성폭력피해 이용시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쉼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매매
13	2	2	1	1	3	2	1	1

○ 제주시 여성 인구 현황

구 분	계	여성	남성	비고
2015. 12월말 인구	470,778	234,710(49.9%)	236,068(50.1%)	

(2) 사업 목적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여성 인력개발사업 추진

○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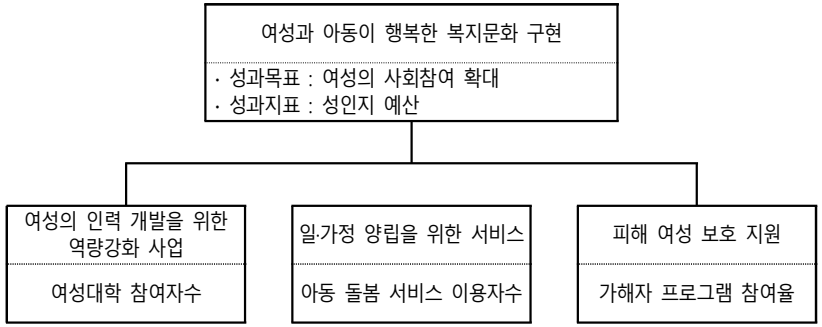
○ 아이돌봄서비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통한 보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가정 양립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

(3) 사업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분야사업안내,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사업내용



(5) 그 밖에 사항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Ⅱ-5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복지문화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인지 예산			12,348	14,311
Ⅱ-5-13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B	여성 역량강화 사업 참여 확대	여성대학 참여자 수	9개사업 /80명	8개사업 /80명	171	139
Ⅱ-5-1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비스	A	개별 돌봄 서비스 활성화	아이 돌봄 이용자 수	34,577	35,268	10,281	11,043
Ⅱ-5-15	피해여성 보호지원	A	피해여성 보호 지원 강화	1인당 지원 예산액	29	28	1,896	3,129

Ⅱ-5-13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지역/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진취적·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지원 필요
- 민·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통문화 조성
-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주시여성대학 운영 사업을 1999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 1,247명의 수료생을 배출, 총 453백만원 지원
-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사업 2015년 14개 사업 120백만원 집행

(2) 사업 목적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여성 인력개발사업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제주시 거주 여성 80명, 제주시 소재 여성단체 및 법인
- 사업 내용 : 여성대학운영,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지원, 여성단체 연계 민관협력사업
- 사업 추진체계
  · 제주시여성대학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 양성평등주간행사 등 민관협력사업 :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제주YWCA 주관
  · 여성단체능력개발사업 지원 : 사업공모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여성역량강화 사업 참여확대 (여성대학 수료율)	87%	88%	수료인원/ 수강인원	여성대학 사업결과보고서	여성대학 출석부
여성역량강화 사업 참여확대 (능력개발사업 및 민관 협력사업 집행율)	88.8%	90%	보조금 집행액/ 보조사업 예산액	보조사업 지원계획 및 결과보고서	지출문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 80명/8개사업		80명/9개사업	80명/8개사업	
사업비 (백만원)	지방비	171	139	△18.71%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여성가족과	설문조사 (여성대학 만족도 조사)	2회	반기별
여성가족과	사업현장 점검 (역량강화 보조사업 현장점검)	사업별 1회	사업별 사업 수행시기
여성가족과	평가회 또는 간담회	1회	연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내부 슈퍼비전	1회	3분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지원계)	계장	오효선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571
		담당	전미경 (행정8급)		064) 728-2572

Ⅱ-5-14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서비스 [보편/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맞벌이 가족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으로 인해 시설 보육 외 대체적인 양육 지원 체계가 부족한 현실임
- 아동 연령, 부모취업여부, 삶의 방식 등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어 다양한 수요자 유형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보충적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사업 목적

-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통한 보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가정 양립 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3호, 아동분야사업안내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만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

(아이돌봄서비스) : 취약계층 및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운영) : 지역아동센터 (43개소) 운영 및 프로그램지원

(아동급식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 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내용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교육청특별회계 지원)
  - 방학 중 중식지원/ 조·석식 연중 지원/ 지역아동센터 석식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제주시교육청,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아이돌봄 이용자수	34,577	35,268	전년대비 증가율	사업수행기관 실적보고	실적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 아이돌봄서비스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34,577명	35,262명	2.48%
사업비 (백만원)	계	1,167	1,201	0.8
	국비	817	841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기타	350	36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43개소	43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5,035	5,425	7.7
	국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4,028	4,340	
	지방비	1,007	1,085	
	기타			

- 아동급식지원비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5,117명	5,224명	2.4
사업비 (백만원)	계	4,079	4,417	8.2
	국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4,467	4,417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만족도조사	아이돌봄 서비스 광역거점 센터 모니터링단	수시	수시
아동급식 모니터링	년 1회	8~ 9월	3분기
사업평가	여성가족부 주관 지자체 아이돌봄 지원사업 평가	1회	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계)	담당	황순실 (보건6급)	전화 번호	064) 728-2851
		담당자	고수정 (복지8급)		064) 728-2853
	주민복지과 (아동드림스타트계)	담당	김지경 (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28-2681
		담당자	양정금 (복지7급)		064) 728-2682

Ⅱ-5-15 피해여성 보호지원 [보편/지역/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해마다 여성폭력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적절한 상담서비스, 치료지원, 보호시설 입소 연계 등의 서비스 수요가 증대함
- 이러한 피해자들의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6개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개소, 여성자활지원센터 1개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공급과 각 기관 간 유기적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됨

(2) 사업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
- 여성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 여성폭력의 적극적인 대처로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구축

(3) 사업 추진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 사업 내용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
  - 여성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
  - 여성폭력의 적극적인 대처로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구축
- 사업 추진체계
  - 운영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 운영방법 : 임기3년(2016.1.29 ~ 2019.1.28), 구성인원 23명, 회의개최 연2회
  - 구성현황 : 행정, 교육기관, 119센터, 가정성폭력·성매매관련시설, 아동보호시설, 의료기관 등
  - 관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제9조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단위:천원)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1인당 지원 예산액	소 계	9,978	6,574	금년사업별 예산액 / 사업 수혜자 수	사업수행 여성복지 시설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	사업 수행 주체별 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보호시설 운영	5,740	5,304			
	상담소운영	107	96			
	피해자 치료회복	951	679			
	가해자 교정치료	2,964	340			
	피해자의료비	216	155			

※ 사업별 예산증가율 대비 수혜인원 증가율이 높음에 따라 성과목표치(1인당 수혜금액) 감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6	6	-
사업비 (백만원)	계	861	1,485	72.4
	국비	503	740	47.1
	• 일반회계	115	-	
	• 특별회계 (회계명:)	-	-	
	• 기금 (기금명: 여성발전기금)	388	740	
	지방비	358	745	108.1
	기타	-	-	-

(나)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등 운영지원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7	7	-
사업비 (백만원)	계	864	1,475	70.7
	국비	486	582	19.7
	• 일반회계	327	-	
	• 특별회계 (회계명:)	-	-	
	• 기금 (기금명: 여성발전기금)	159	582	
	지방비	378	893	136.2
	기타	-	-	-

(다) 여성폭력피해자 피해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5	4	△20
사업비 (백만원)	계	78	72	△7.6
	국비	51	50	△1.9
	•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회계명:)	-	-	
	• 기금 (기금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1	50	
	지방비	27	22	△18.5
	기타	-	-	-

(라) 여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4	4	-
사업비 (백만원)	계	83	83	-
	국비	58	58	-
	•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회계명:)	-	-	
	• 기금 (기금명: 여성발전기금)	58	58	
	지방비	25	25	-
	기타	-	-	-

(마)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7	7	-
사업비 (백만원)	계	11	14	27.2
	국비	8	10	25
	•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회계명:)	-	-	
	• 기금 (기금명: 여성발전기금)	8	10	
	지방비	3	4	33.3
	기타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만족도 조사	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연 1회	수시
내부 슈퍼비전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	연 1회	3분기
사업추진 결과보고회	정기적 평가회의	연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계)	계장	황순실 (보건6급)	전화 번호	064)728-2851
		담당	김미란 (행정7급)		064)728-2852

6) 중점추진사업 6 : 청소년의 신바람 나는 환경조성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제주시 청소년(9세~24세) 인구는 남자 50,549명, 여자 45,477명으로 전체 96,026명으로 제주시 전체 인구 중 20.8%를 차지함

○ 공공청소년수련시설현황은 청소년 문화의 집 10개소, 청소년 수련원 2개소,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청소년 야영장 1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로 총 15곳이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활동 공간을 개선하고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연계 및 지원이 필요함

※ 청소년인구 및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 분	전체인구	청소년인구(9~24세)	비 고 (남자/여자)
2015. 12. 31. 현재	459,876	96,026	50,549/45,477

구 분	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유스 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수련원
총계	15	1	10	1	1	2

(2) 사업 목적

○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청소년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는 기회 제공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수련 공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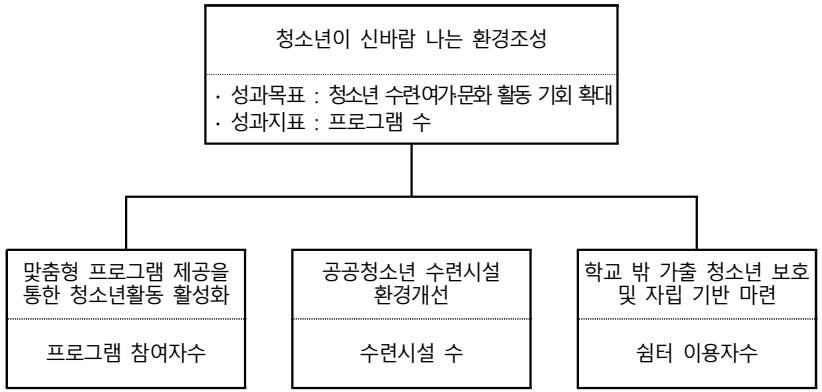
○ 청소년의 내부적인 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 할 수 있는 수련시설 제공

○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출청소년의 대한 조기발견, 일시보호 및 선도를 통해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켜 비행과 탈선을 예방

(3) 사업 추진근거

○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4) 사업내용



(5) 그 밖에 사항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Ⅱ-6	청소년이 신바람 나는 환경 조성		청소년 수련·여가·문화 활동 기회 확대	프로그램 수			422,052	472,786
Ⅱ-6-16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AB	청소년의 자율적 역량개발 및 체험중심 수련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수	44,309	45,000	418,706	471,533
Ⅱ-6-17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개선	A	청소년이 선호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활동 공간 제공	시설기능 보강 시설 수	7	5	3,050	925
Ⅱ-6-18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자립기반 마련	AB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증가	쉼터 이용자 수	2,587	2,700	296	328

Ⅱ-6-16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보편/지역]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은 구성원끼리 더 친밀하며 강렬한 감정을 지니고 있음. 이에 청소년 또래집단의 활동을 통한 청소년지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기는 추상적인 이론 교육을 통한 지식 습득보다는 현장 체험적이며 자율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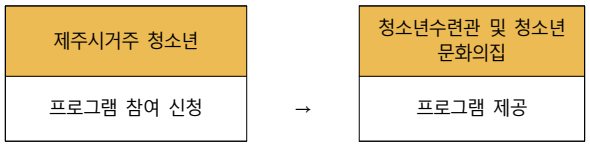
-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자기 손으로 힘들여 노력했던 일이 성취되어 현실 속에서 뚜렷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함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11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10개소
- 사업 내용 : 청소년이 역량 있고 창의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인문학 캠프, 진로·직업 체험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Dream 프로젝트 몽『夢』운영 등), 건강한 가족 만들기 위한 청소년 중심의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가족캠프, 5월 사랑한 DAY 등)
- 사업 추진체계



- 협력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창의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4,309	45,000	프로그램 참여자수	사업결과보고서	프로그램 운영일지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44,309	45,000	1.5%
사업비 (백만원)	계	418,706	471,533	12.6%
	국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418,706	471,533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제주시	사업대상설문	연1회	연말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모니터링	연1회	9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계)	담당	송미영 (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28-3483
		담당자	강정은 (행정8급)		064) 728-3485

Ⅱ-6-17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환경개선 [보편/지역/지속]

(1) 추진배경 및 경과

-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는 문화 및 취미활동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활동 공간을 개선하고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제주시 청소년(9세~24세) 인구는 남자 50,549명, 여자 45,477명으로 전체 96,026명으로 제주시 전체 인구 중 20.8%를 차지함
- 공공청소년수련시설현황은 청소년 문화의 집 10개소, 청소년 수련원 2개소,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청소년 야영장 1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로 총 15곳이 운영되고 있음

(2) 사업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수련 공간 확충
- 청소년의 내부적인 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 할 수 있는 수련시설 제공

(3) 사업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4)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
- 사업 내용 : 다목적강당 신축 및 리모델링, 장애인용 리프트 수리 등 기능보강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시설수	7	6	기능보강 시설 수	내부문서	이호조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대상이 전년도 7개소로 순차적으로 진행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7개소	6개소	△ 28.5%
사업비 (백만원)	계	3,050	925	△ 69.6%
	국비	2,440	740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2,440	740	
	• 기금 (기금명:)			
	지방비	610	18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실무협의체 회의	청소년분과 관련 회의	연 2회	연말
시설만족도 조사	기능보강시설 이용자	연 1회	설문조사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청소년계)	담당	문석훈 (행정6급)	전화번호	064) 728-2601
		담당자	김치옥 (건축운영7급)		064) 728-2603

Ⅱ-6-18 가출청소년 보호 및 자립기반 마련 [보편/지속]

(1) 추진배경 및 경과

-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의 연계 및 지원이 필요함

(2) 사업목적

-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출청소년의 대한 조기발견, 일시보호 및 선도를 통해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켜 비행과 탈선을 예방

(3) 사업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및 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 청소년 교육, 복지지원 조례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청소년 쉼터 차등보호지원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지원
  - 숙식제공, 학교등교지원 등 보호사업, 재·가출예방, 자립지원, 가정생활교육 등 교육사업, 개인상담, 거리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사업
  - 시설 입소경로 :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및 직접 방문
  - 협력기관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입·퇴소청소년의 사후관리대상자 수	2,587	2,700	지원인원/목표인원	사례관리 실적보고	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2개소	2개소	11.1%
사업비 (백만원)	계	295	328	33
	국비	136	164	28
	· 일반회계			-
	· 특별회계(회계명:			
	· 기금(기금명:청소년육성기금)	136	164	28
	지방비	159	164	5
	기타			

(7) 사업모니터링 계획

주 체	방 법	횟 수	시 기
실무부서	쉼터 운영현황점검	연 2회	5월, 9월
청소년쉼터	입소자 및 가족상담 등으로 가정·학교복귀 관리	연 중	연중
제주시	실적평가	연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청소년계)	담당	문석훈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601
		담당자	양은숙 (복지7급)		064) 728-2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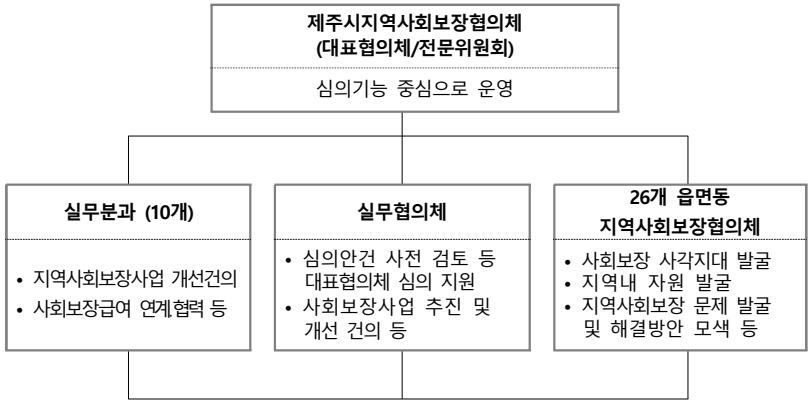
7) 중점추진사업 7 : 찾아가는 사례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체계 강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민관 기관, 시설, 단체,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모금활동이 필요

○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 후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으로 확대되어 추가 위원을 구성하고 2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407명 위원을 위촉하였음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

○ 사회복지수혜자 현황

구분	계	기초수급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노령연금	장수수당			
2015	96,387	16,928	23,125	36,490	13,338	173	4,298	2,035

※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자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별 현황

구 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 구	8,313	9,565	9,098	2,979
인 원(명)	12,013	14,775	14,468	4,565

(2)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여 삶의 질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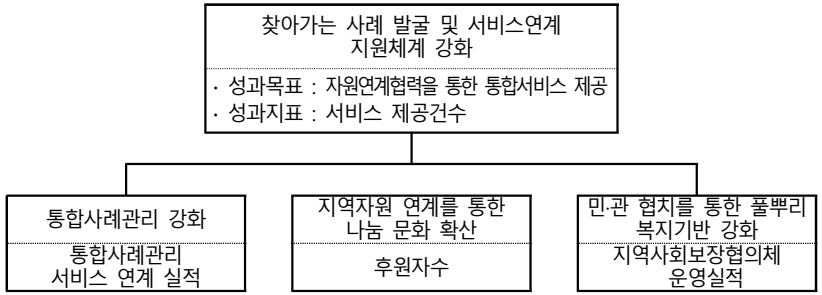
○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복지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사업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희망복지매뉴얼,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4) 사업내용



(5) 그 밖에 사항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Ⅲ-7	찾아가는 사례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체계 강화		자원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건수			712	709
Ⅲ-7-19	통합사례관리 강화	A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안정화	통합사례관리 회의 개최 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실적	18 280	20 390	319	266
Ⅲ-7-20	지역자원을 연계한 나눔 문화 확산	B	나눔 문화 활성화	후원자 수	341	345	123	155
Ⅲ-7-21	민·관 협치를 통한 풀뿌리 복지기반 강화	B	민관 협력 및 지역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회의 건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156	200	270	288

Ⅲ-7-19 통합사례관리 강화 〔 보편/지속 〕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한 사례관리대상자의 삶의 질 증진

(2)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여 삶의 질 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 보건복지부 희망복지매뉴얼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사례관리대상자 390명
- 사업 내용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공공, 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
  - · 중점사업대상자 :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탈락 가구
  - →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가구
  - · 내 용 : 대상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
- 사업 추진체계
  - · (협력기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분과 서비스 연계 협력
    - 목 적 : 민·관의 사례관리 공유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문성 강화
    - 일 시 : 주 1회 / 참여자 : 사회복지 유관기관 25개소 사례관리 실무자
    - 내 용 : 사례관리대상자 정보공유 및 기관 서비스 연계 등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기관

구 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신건강증진(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기타(복지수행기관·단체)
25	7	2	2	2	2	10

❍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력 강화

- 고위험군 대상자(장애, 알콜, 정신질환 등) 사례관리 및서비스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협의
  - · 서비스 제공기관 사례관리대상자의 중복 지원 예방
  - · 기관별 개별 서비스제공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 협의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통합사례관리 회의 개최 건 수	18	20	회위개최건수	내부문서	내부문서 (회의개최문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280	390	39.2%
사업비 (백만원)	계	319	266	△ 16.6%
	국비	205	133	
	· 일반회계			
	지방비	114	133	

※ 예산감소사유 : 이도2동 사례관리 시범사업 종료로 사업예산 감소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실무협의체	모니터링 및 사례회의	12회	매월
자체평가회	회의	2	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계)	담당	한혜정 (복지6급)	전화번호	064) 728-2981
		담당자	김성훈 (복지7급)		064) 728-2982
		담당자	김혜영 (복지8급)		064) 728-2983

Ⅲ-7-20 지역자원을 연계한 나눔문화 확산 [지역/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나누고 배려하는 기부·나눔 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

(2) 사업 목적

-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기부식품제공기관 3개소 및 공동모금회 등에 기부를 원하는 시민
- 사업 내용 : 식품 기부사업 및 나눔 후원 활성화 분위기 조성
  -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 단체 등의 물품 후원 연계, 착한 가게 협약체결
  - 제주시 공무원의 매월 일정액을 원천 후원 연합모금 사업
- 사업 추진체계

  가. 책임기관 : 제주시

  나. 협력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푸드뱅크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주민참여방법 : 2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서로 돕고 살피는 지역자원 발굴 연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후원자수	6,000	6,300	전년대비 후원자수 증가비율(5%증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푸드뱅크·마켓 내부문서	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개소)		3개소	3개소	0
사업비 (백만원)	계	123	155	26% 증
	지방비	123	155	26% 증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	2	반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등)	간담회	1	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계)	담당	김미숙 (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28-2471
		담당자	성현숙 (복지6급)		064) 728-2472
		담당자	박신력 (복지8급)		064) 728-2473

Ⅲ-7-21 민·관 협치를 통한 풀뿌리 복지기반 강화 [지역/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서로 돕고 살피는 풀뿌리 지역복지 기번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복지 증진

(2) 사업 목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복지증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업 내용 : 민관협력 등 지역사회보장사업 연계협력 사업 추진

구분	구성인원	주요기능	비고
제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표협의체(26), 실무협의체(33), 실무분과10개 (138)명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및 아래사항 자문 심의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등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26개 읍면동 407명	- 복지 사각사각 지대 발굴, 복지자원 발굴, - 소외계층 서비스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가. 책임기관 : 제주시
  - 나. 협력기관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다. 협력방법 : 네트워크 회의 및 연계 사업 추진
  - 라. 주민참여방법 :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기회 확대 및 홍보, 주민제안제도 운영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회의건수 예산증가율	156 270	200 288	회의건수 전년대비증가율	내부문서 이호조	자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	2	
사업비 (백만원)	계	270	288	6.6
	지방비	270	288	6.6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2	반기
읍면동담당자	간담회	2	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계)	담당	김미숙 (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28-2471
		담당자	성현숙 (복지6급)		064) 728-2472

8) 중점추진사업 8 :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기본적인 일상을 유지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취약계층의 대상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 이외 공공의 적극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기본적인 공공부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지원이 있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뿐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생활을 조금 더 안정되게 보장하고자 취약계층지원을 확대해 왔음

○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영역이 지원과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급작스런 빈곤층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긴급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복지지원이 필요함

○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과 달리 경제활동의 부담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야함에 따라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따라서 한부모·조손가정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학대와 복지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구 분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세대/가구원)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세대/가구원)
계		2,576/6,618	1,668/4,298	908/2,320
모자가족	세대/가구원	1,875/4,796	1,145/2,933	730/1,863
부자가족	세대/가구원	701/1,822	523/1,365	178/457

(2) 사업 목적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생활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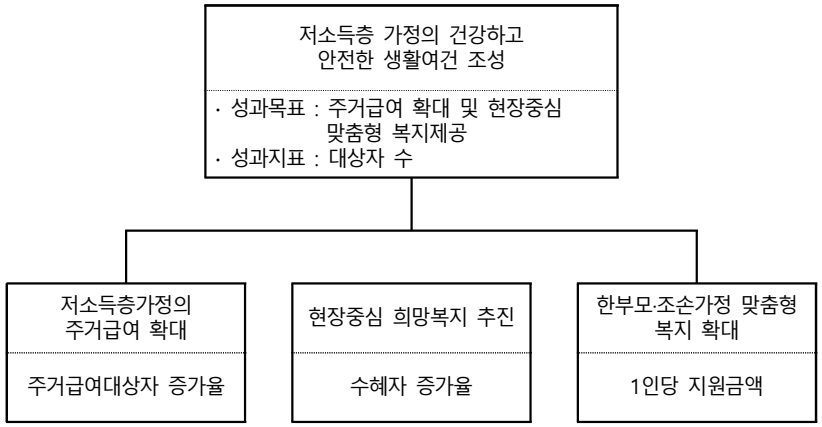
○ 사전 예방 및 맞춤형 위기가정 지원 시스템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정의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양육 및 교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

(3) 사업 추진근거

○ 긴급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201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4) 사업내용



(5) 그 밖에 사항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Ⅲ-8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주거급여확대 및 현장중심 맞춤형 복지제공	대상자 수			11,639	14,579
Ⅲ-8-22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급여 확대	A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수혜자 증가율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7,994	8,400	10,864	10,590
Ⅲ-8-23	현장중심의 희망복지추진	AB	위기 가구 발굴, 빈곤층 민생안정지원	수혜자 증가율	440	480	775	624
Ⅲ-8-24	한부모·조손가정의 맞춤형 복지확대	AB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1인당 지원 금액	80	82	3,879	3,365

Ⅲ-8-23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급여 확대 [보편/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개편 전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함께 일정비율로 지급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주거형태와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도록 확대·발전

(2) 사업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주거형태와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주거급여법 제1조, 제3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7,994명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사업 내용
  - 임차급여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임차가구)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원(자가 가구)
- 사업 추진체계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관리 : 제주시
  - 임차급여 지급 : 제주시
  - 수선유지급여 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	7,994	8,400명	전년대비 5%증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통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7,994	8,400	5% 증가
사업비 (백만원)	계	10,864	10,590	2.5% 감소
	국비	8,677	8,472	2.5% 감소
	·일반회계	8,677	8,472	
	·특별회계 (회계명:)			
	·기금 (기금명:)			
	지방비	2,169	2,118	2.5% 감소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실무분과 위원회	모니터링	연2회	상·하반기
실무협의체	모니터링 및 평가	연2회	상·하반기
대표협의체	모니터링 및 제안, 심사	연2회	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건축행정과 (건축지원계)	담당	허 진 (건축6급)	전화번호	064) 728-3071
		담당자	강영수 (복지7급))		064) 728-3072

Ⅲ-8-23 현장중심의 희망복지 추진 [보편/지역/지속]

(1) 추진배경 및 경과

- 세계화 및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급작스런 빈곤층 발생 가능성이 증대 함
- 가족의 일상생활 영역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2) 사업목적

-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곤란자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복지 증진

(3) 사업추진근거

- 긴급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조례, 201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4)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급작스런 위기상황에 있는 제주시민
- 사업 내용 :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지원, 간병비 지원 등

○ 긴급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75% (329.3만원), 기초급여 탈락중지자 우선 연계 등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적정 판단기준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소득 :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및 금액 (4인기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 타
113.1만원	300만원 이내	40.8만원	초등 21.4만원 중등 34만원 고등 41.7만원 수업료, 입학금	복지시설이용료 : 140.2만원 연료비 : 92,800원 장제비 : 75만원 해산비 : 6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등
- 지원기준 : 1인 7만원, 2인 10만원, 3인 15만원, 4인 이상 20만원
- 지원절차

민원인 또는 직권조사 (읍.면.동)	⇒	현장 확인 및 조사 (읍.면.동)	⇒	신청 - 관계서류 첨부 (읍.면.동)	⇒	· 확정(행정시) · 읍.면.동 통보 → 대상자 · 지원 → 행정시

※ 지원기간 : 책정 후 1년간(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가능)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지원절차

지원요청		읍.면.동		시		읍면동
대상자 및 가족	⇒	간병인 및 입원 확인 후 지원요청	⇒	간병결정 및 통보	청구 ⇔ 지원	서류구비 후 간병비 신청(시)

- 사업 추진체계
  - (협력기관) 관내 종합병원 및 간병인 협회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수혜자증가율	629	733	전년대비 증가율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이호조 지출문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 긴급복지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400	500	25% 증가
사업비 (백만원)	계	686	623	△ 9.0
	국비	549	499	
	• 일반회계	549	499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137	124	
	기타			

- 특별생계비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43	143	
사업비 (백만원)	계	143	143	0
	지방비	143	143	0

- 저소득층 간병비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86명	90명	
사업비 (백만원)	계	72	86	19%
	지방비	72	86	19%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년 2회	1,3분기
협력기관 회의	현장방문 회의	년 2회	반기별 2회

(8)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계)	담당	김미숙 (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28-2471
		담당자	성현숙 (복지6급)		064) 728-2472
		담당자	박신력 (복지8급)		

Ⅲ-8-24 한부모 · 조손가정의 맞춤형 복지 확대 [보편/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과 달리 경제활동의 부담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한부모·조손가정이 동시에 해결 해야함에 따라 두가지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2) 사업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정의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양육 및 교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저소득한부모 1,668가구 4,298명, 조손가정44가구 119명, 시설입소자39가구 83명
- 사업 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조손가정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읍면동, 한부모시설		시군구
대상자 파악 신청접수	→	대상자 확인 및 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1인당 지원액	80만원	82만원	(지원금액/금년도 수혜자수)	지급내역 (전자결재시스템)	e호조 시스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3,800	4,100	7.8
사업비 (백만원)	계	3,879	3,365	△0.13
	국비		1,054	
	▪ 기금 (기금명: 양성평등기금)	1,420	1,054	
	지방비	2,459	2,311	
	기타			

※ 한부모가족 자녀 감소로 인해 아동양육 예산 변경사항 반영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시군구	사업 대상 설문	연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계)	담당	박인하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531
		담당자	홍가연 (복지8급)		064) 728-2534

9) 중점추진사업 9 : 맞춤형 일을 통한 자활 역량강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역 자활대상자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 공동체 육성,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나 취업, 창업, 직업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지속지원하며, 자활공동체 연계 및 사회참여 가능 업종의 개발 및 사회훈련 등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꾸준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할 필요 있음

○ 자활대상자들의 고용지원은 일회성으로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고용상담과 취업상담 및 훈련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통합적 관리측면에서도 지역자활센터가 거점형으로 위치하고 고용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 개별, 가족 단위의 지지기반 마련이 중요

○ 자활기업은 창업한 이후 시장적응기간 동안 한시적인건비 지원 이외에 그 어떤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3년 정도 시장진입 훈련을 마친 저소득주민들이 창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파악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회 실태 조사, 생계 및 생활 안정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 가능한 사업개발, 노숙인 지원기준과 대상범위 선정, 연계가능 자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 있음

○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기 관 명	규모별	사업단 수	비고
계		13개 기업 / 25개사업단	
제주수눌음 지역자활센터	확대형	5개기업 / 15개사업단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확대형	8개기업 / 10개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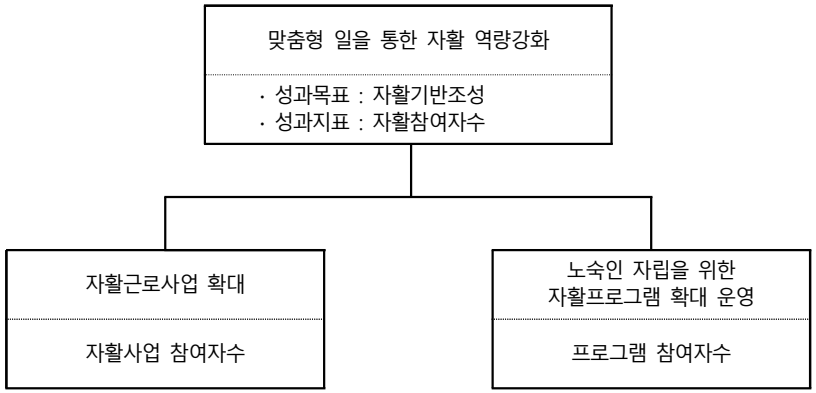
(2) 사업 목적

○ 자립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전문자격증 취득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촉진

(3) 사업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내용



(5) 그 밖에 사항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Ⅲ-9	맞춤형 일을 통한 자활 역량강화		자활기반 조성	자활참여자 수	730	745	645,992	603,753
Ⅲ-9-25	자활 근로사업 확대	A	맞춤형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자활 참여자 수	730	745	644,722	602,380
Ⅲ-9-26	노숙인 자립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 확대	B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율	13.2	8.3	1,270	1,373

Ⅲ-9-25 자활근로사업 확대 (보편/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비용에 관한 부담 해소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자립·자활의 발판 마련
- 자활사업 참여자 697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42회 실시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중 전문·민간자격증 취득 희망대상 46명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으로 38명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지역자활센터 2개소 운영예산 624,722천원 지원하여 전문적·체계적 자활인프라 구축으로 탈수급 지원

(2) 사업 목적

- 자립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전문자격증 취득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촉진

(3) 사업 추진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 제11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외 1개소
- 사업 내용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자존감 고취 및 전문자격 취득 희망자에 대한 수강료 등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자활센터 차원의 지속적인 사례 관리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참여자의 고충해결 및 취업연계를 통한 자활·자립 촉진
- 사업 추진체계
  ① 책임기관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② 협력기관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③ 협력방법 : 민·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상호협력관계 유지를 통하여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기본 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문제해결 및 지속적·체계적 서비스 지원으로 자활·자립 도모
  ④ 주민참여 방법 :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 및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활사업 참여자수	745	730	지원인원/목표인원	운영실적보고	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745	730	△2.01
사업비 (백만원)	계	645	602	△6.6
	국비	438	408	△6.8
	• 일반회계	438	408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207	194	△6.2
	기타			

※ 자활장려금 : 중앙부처 제도변경으로 사업비 변경(국세청 근로 장려금 제도 유사사업)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제주시	사업장방문	2	3월, 9월
지역자활센터	설문조사	2	4월, 12월
제주시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년1회	3분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복지계)	담당	고은영 (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28-2521
		담당자	강이윤 (복지8급)		064) 728-2522

Ⅲ-9-26 노숙인 자립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확대 (지역/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사회보호망 구축 필요
-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노숙인 지원 강화를 통해 리스타트 사업 활성화

(2) 사업 목적 :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제주시 관내 노숙인 및 노숙관리자 55명
  ※ 노숙관리자 : 사례관리 중인 잠재적 노숙 위험군
- 사업 내용 :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프로그램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제주시희망원,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전년대비 참여자 증가율	13.2	8.3	(금년참여자수-전년도참여자수/전년도참여자수)×100	지원내역, 프로그램 수행보고서	시설정보시스템, 결과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20	130	8.3
사업비 (백만원)	계	1,270	1,373	
	국비	548	594	
	지방비	722	779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설문기법	사업대상설문	년 1회	연말
내부슈퍼비전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	년 1회	3분기
평가회의 또는 간담회	정기적 평가회의	년 2회	반기별 1회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계)	담당	김미순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551
		담당자	김미순 (행정6급)		064) 728-2551

10) 중점추진사업 10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제주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23,125명으로서, 제주시 전체 인구(459,876명)의 5.02%를 차지하며,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2·3급)은 9,741명으로 42.1%이며, 남성장애인 12,735명(55%) 여성장애인은 10,390명(45%)을 차지하고 있음

○ 장애인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는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과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용지원 서비스,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으로 나타남

○ 이러한 욕구는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소득보장정책과 일자리지원 사업이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여김

○ 또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의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근로 생활을 제약함으로써 빈곤가구의 빈곤탈피를 저해하고, 심적 부담감 해소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 함

○ 연도별 장애인 인구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원(명)	21,921	22,290	22,475	27,794	23,125

(2) 사업 목적

○ 중증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 보전을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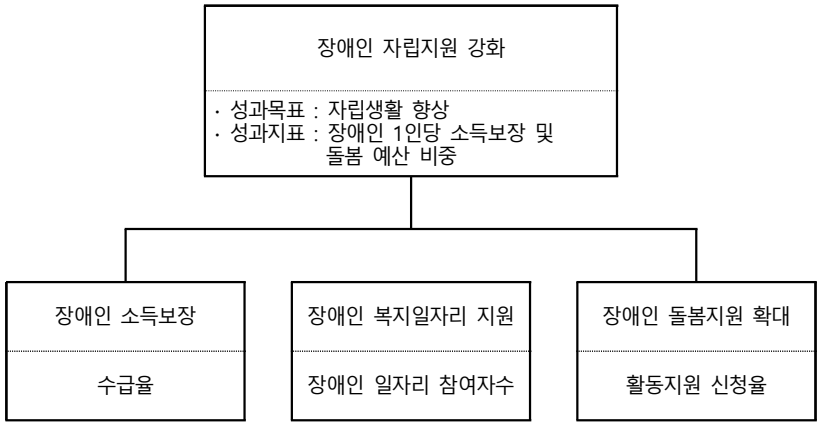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

(3) 사업 추진근거

○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4) 사업내용



(5) 그 밖에 사항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IV-10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자립생활 향상	장애인 1인당 소득보장 및 돌봄예산 비중			18,766	19,887
IV-10-27	장애인 소득 보장	A	저소득 장애인가구 생활 안정 도모	수급율	3,400	3,500	8,002	8,113
IV-10-28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A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	548	1,100	4,473	4,635
IV-10-29	장애인 돌봄 지원 확대	A	1급 등록 장애인 중 25% 이상 신청	활동지원 신청자수	530	600	6,291	7,139

Ⅳ-10-27 장애인 소득보장 [보편/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중증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 보전을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
- 제주시 전체 등록장애인 인구는 2015년 12월 말 기준 23,125명이고 1급이 2,439명, 2급이 3,028명으로 중증 장애인은 5,467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23.6%를 차지함
- 년도별 장애인연금 지원현황은 2013년 3,050명에게 4,502백만원을 2014년 3.361명에게 5,992백만원을 2015년 3,391명에게 7,663백만원을 지원하였음

(2)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6~7조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 지원
- 사업량 : 중증장애인 3,500명
- 사업대상 :
  - 만18세이상 중중장애인(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인 자 → 3급 중복 : 3급에 해당되는 장애 외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2016년도 선정기준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 가구 160만원)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 지원
- 사업 추진체계
  -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자 신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확인조사 → 대상자결정 → 급여지원

(4)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 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 방법
수급률(%)	8,002백만원 /3,400명	8,113백만원 /3,500명	(수급자/수급권자) ×100	월별 지원실적	지출시행 문서

(5)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3,400	3,500	2.9
사업비 (백만원)	계	8,002	8,113	1.4
	국비	5,602	5,679	
	• 일반회계	5,602	5,679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2,400	2,434	
	기타			

※ 소요예산 : 8,113백만원(국비 70%, 지방비30%)

(6)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 체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 슈퍼비전	실문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	년 1회	3분기

(7)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계)	담당	오숙희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3441
		담당자	이현주 (복지7급)		064) 728-3442

Ⅳ-10-28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보편/지속)

(1) 추진배경 및 경과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직업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

(2) 사업 목적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확대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및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자 1,150명
- 사업 내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3개 사업

구 분	내 용	사업비 (단위:백만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	• 장애인을 고용한 5인이상 50인 미만 도내 영세사업체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4대보험 가입업체) - 장애인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	1,700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사업 (참여형)	• 만18세이상 근로가 가능한 1~6급 장애인 - 업무 : 환경정비,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디엔디케어 - 인건비 : 월 338,000원 * 570명 - 근무시간 : 주14시간 (월56시간)	2,161 (국, 지방비 50)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일반형)	•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행정 지원 업무 - 인건비 : 1,261,000원 * 36명 -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699 (국·지방비 50)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경로당 등 어르신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인건비 : 1,030,000원 * 7명 - 근무시간 : 주5일 (25시간)	74 (국80:지방비20)

- 사업 추진체계 : 경로장애인복지과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연계 사업추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수	548	1,100	일자리 참여인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시스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시스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126	1,150	2
사업비 (백만원)	계	4,473	4,635	3.6
	국비	2,236	1,490	
	지방비	2,236	3,14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내부슈퍼비전	실문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	년 2회	1, 3분기
제주시	협력기관 간담회	년 1회	6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계)	담당	김미순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2551
		담당자	마광진 (복지8급)		064) 728-2552

Ⅳ-10-29 장애인 돌봄지원 확대 [보편/지속]

(1) 추진 배경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의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근로생활을 제약함으로써 빈곤가구의 빈곤탈피를 저해하고, 심적 부담감 해소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여건조성 필요

(2) 사업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4)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만6세이상~만65세미만 등록 1~3급 장애인 중 서비스를 신청하여 활동지원등급 (1-4급)을 받은자
- 사업내용 : 인정등급에 따른 대상자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체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제공
- 사업추진체계
- 책임기관 :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 협력기관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장애인부모회
- 협력방법 : 협력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업무추진 협의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중증장애인 장애인 돌봄 이용자 수	530	570	1급-3급 등록장애인 중 25%이상 신청	행복e음	행복e음 데이터

※ 국고보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인정등급 4등급 이상 받은자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에게 월 20~90시간 추가 지원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국비70%, 지방비30%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530	570	7.5
사업비 (백만원)	계	6,291	7,139	13.5
	국비	4,404	4,997	13.5
	• 일반회계	4,404	4,997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1,887	2,142	13.5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 슈퍼비전	실무협의체 및 분과회의	년 1회	3분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계)	담당	오숙희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3441
		담당자	오숙희 (행정6급)		064) 728-3441

11) 중점추진사업 11 : 무장애와 안전한 복지환경 구축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장애인이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 등을 통해 권익 증진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도시의 시설-환경에 장애인 차별요소를 개선해 이동권과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 증진을 도모해야 함

○ 안전한 복지환경 구축과 내실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및 적정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2)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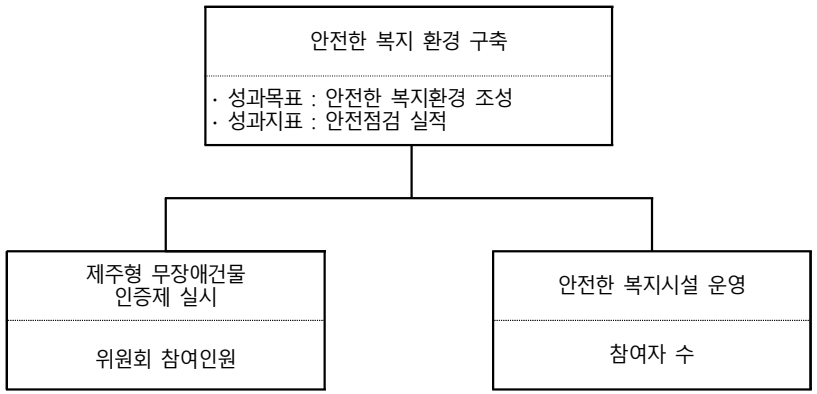
○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및 시설에 개선

○ 취약계층 거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3) 사업 추진근거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4) 사업내용



(5) 그 밖에 사항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IV-11	안전한 복지 환경 구축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안전점검 실적			-	-
IV-11-30	제주형무장애 건물인증제실시	B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구성	위원회 참여인원	0	3	-	-
IV-11-31	안전한 복지 시설 운영	B	안전한 복지환경 구축	참여자 수	83	90	-	-

Ⅳ-11-30 제주형 무장애 건물인증제 실시 [지역/지속]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시설에 장애인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데 기여

(2) 사업 목적

-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시설에 개선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함.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2014.12.31.제정)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4) 사업내용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도시 환경 시설
- 사업 내용 : 무장애 유니버셜디자인 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 추진체계
  - (협력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 고려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진행 중으로 연계 추진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학술연구용역 진행 중 (2016.9월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시행중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셜 디자인 위원회 구성 예정 : 세부계획 수립중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위원회 참여인원	0	3	위원회참여인수	내부문서	내부문서

※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추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 비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명)		비예산	비예산	
사업비 (백만원)	계	미시행	위원회 구성 추진	
	국비			
	·일반회계			
	지방비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실무협의체	회의	2회	상,하반기
실무담당자 간담회	회의	1	계획공고 및 확정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계)	담당	김미순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28-3441
		담당자	마광진 (복지8급)		064) 728-3441

Ⅳ-10-28 안전한 복지시설 운영 [보편/지속]

(1) 추진배경 및 경과

-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거 사업주(고용주)는 종사자로 하여금 시설이나 설비·물질, 작업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주어짐
- 이를 위한 최소한 기본 안전점검표를 토대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체없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중 83개소 종사자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자 1명을 임명하여 년 2회 종사자 및 입소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종사자 대상 년 2회 8시간 인권의 무교육 실시를 통하여 안전한 복지시설 운영 추진

(2) 사업 목적 : 취약 계층 거주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대상 :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노인, 노숙인 생활시설 83개소
- 사업 내용 :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여건 강화
  - 소방, 전기, 구조물 안전성 파악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재난위험요소의 사전파악 및 비상대처 시 매뉴얼 교육
  -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시설 자체 안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등
- 사업 추진체계 : 사회복지시설 담당 부서 및 관련기관 연계, 협력
  - 안전관리공단, 소방교육대, 자체교육(내부강사 초빙)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안전관리교육	83	350	지표인원/목표인원	운영실적보고	보고서
인권의무교육	83	350	지표인원/목표인원	운영실적보고	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83	90	2
사업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국비			
	지방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실무분과	회의	2회	상하반기
실무협의체	모니터링	1회	중간평가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계)	담당	김미순 (행정6급)	전화 번호	(064)728-3441
		담당자	마광진 (복지8급)		(064)728-3441

12) 중점추진사업 12 : 어우러져 존중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다문화 가족은 매년 지속적인이고 급속한 외국인 증가로 인한 접촉기회가 증대되어 다민족·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외국인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성공적인 다문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복지는 물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온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현재 정착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지역복지를 지역(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마을 만들기를 통해 복지 커뮤니티를 실현하고 지역적 특색 있는 사업추진으로 미래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103개 법정리동에 대한 자원조사를 추진하고 마을공동체(삼도1동) 사업 추진

(2)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들에게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다문화 복지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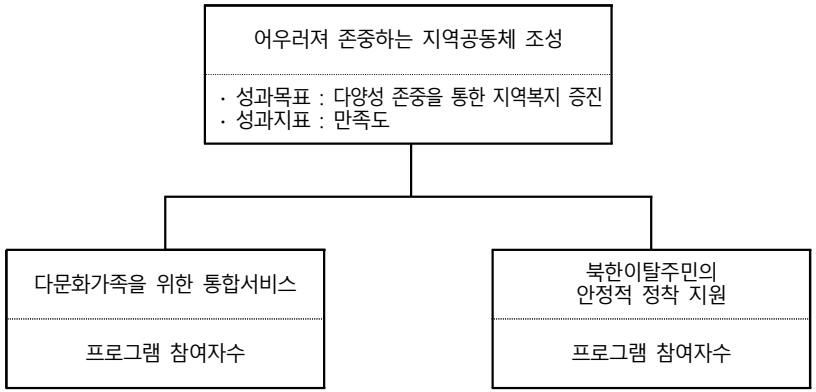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들이 낯선 환경인 제주 현 거주지에서 정서적안정감과 지역사회 이해를 빨리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운영 및 주거용품지원으로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에 도움

○ 복지문제를 지역(마을) 내에서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복지 문제해결

(3) 사업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4) 사업내용



(5) 그 밖에 사항

과제 번호	세부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5	2016
IV-12	어우러져 존중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다양성 존중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만족도			751	799
IV-12-3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AB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참여자수	7,445	7,668	741	788
IV-12-33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B	북한이탈주민이 안정된 정착	우을증 척도 감소율	5%	7%	10	11
IV-12-34	복지마을 만들기	B	복지공동체구현	복지마을 참여수 -	1	3	-	-

Ⅳ-12-3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보편/지속]

(1) 추진배경 및 경과

- 다문화가정의 교육 참여를 위한 시내 ↔ 시외 간 거리 적 문제 및 센터 접근성 문제
-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문제

- 연도별 외국인주민 현황(자녀 미포함)

(단위 : 명)

연도별	제주시 인구수	계	국적취득자	국적 미취득자	비 고
2011	417,539	4,821	421	4,400	인구의 1.15%
2012	422,790	5,704	519	5,185	1.34%
2013	429,656	6,886	598	6,288	1.6%
2014	438,165	8,862	738	8,124	2.02%
2015	448,834	10,792	877	10,792	2.4%

- 기본 현황(국적취득 포함, 자녀 미포함)

(단위 : 명)

계	근로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11,669	3,611	2,035	935	1,318	3,770

※ 제주시 전 인구의 2.5%, 외국인주민 자녀 포함 시 3%

-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명, 만 나이 기준)

계	0~6세	7~12세	13세~18세
1,953	1,283	439	231

- 외국인 주민세대수

(단위 : 명)

계	중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기타
2,298	926 (349)	65	135	10	576	241	12	7	54	2	270

- 다문화가정의 급속한 증가

연도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증 감
2011	1,379	1,024	355	
2012	1,490	1,127	363	8% 증가
2013	1,665	1,245	420	11.7% 증가
2014	1,866	1,355	511	12% 증가
2015	2,035	1,446	589	8.3% 증가

(2)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들에게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다문화 복지체계 구축

(3) 사업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다문화 가족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업 추진체계
  - 협력기관 : 제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 방법
프로그램 참여자 수	7,445 (5,171 + 2,274)	7,668 (5,326 + 2,342)	센터운영 실적 + 단체별 프로그램 실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적보고, 프로그램 추진실적 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국비(기금), 지방비

구분	2015A)	2016(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건)	11	12	1	9%
사업비 (단위: 백만원)	601	616	△15	△2.4%
- 국비	421	406	△15	△2.4%
•기금 (기금명 : 여성발전기금)	421	406	△15	△2.4%
- 지방비	180	210	30	16.6%

(나)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 지방비 100%

구분	2015(A)	2016(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건)	9	10	1	11%
사업비 (단위: 백만원)	140	172	32	23%
- 지방비	140	172	32	23%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만족도조사	전화, 방문, 설문지	연 2회	전화 상/하반기, 수시
상담 슈퍼비젼	다문화 거점센터 주관	연 3회	-
상담 사례발표	다문화 거점센터 주관	연 2회	-
워크숍	센터 직원 워크숍 개최	연 1회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계)	담당	황순실 (보건6급)	전화 번호	064) 728-2851
		담당자	고수정 (복지8급)		064) 728-2853

Ⅳ-12-33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사업 [지역/계속]

(1) 추진배경 및 경과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온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현재 정착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정된 생활 유지와 교육 및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 필요

(2)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들이 낯선 환경인 제주 현 거주지에서 정서적안정감과 지역사회 이해를 빨리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주거용품지원으로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에 도움

(3) 사업 추진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최초전입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30여명 (2015년말 북한이탈주민218명)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제주지역정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주거용품 지원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제주시 주민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센터 연계추진
  - 제주시 :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센터 : 참여대상자 상담 및 프로그램안내, 프로그램운영
  - 하나센터 담당자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참여 연계활동
  -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력하여 정신건강척도 측정결과 활용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우울증 척도 감소율	20%	10%	프로그램참여 전·후 우울증 검사결과척도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측정조사자료	참여자 전수조사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프로그램 수/참여자 수)		1건 20명	1건 25명	25
사업비 (백만원)	계	10	11	10
	국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지방비	10	11	1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제주특별자치도하나센터,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우울증척도검사	1	하반기
주민복지과	모니터링회의	1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계)	계장	김미숙 (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28-2461
		담당	김미숙 (복지6급)		064) 728-2461

Ⅳ-12-34 복지마을 만들기 (지역/계속)

(1) 추진배경 및 경과

- 지역복지를 지역(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마을 만들기를 통해 복지 커뮤니티를 실현하고 지역적 특색 있는 사업추진으로 미래형 복지모델 구축

※ 2015년도 신규사업 : 제주시 읍면동 자원조사 및 마을공동체(삼도1동) 사업 추진

(2) 사업목적

- 복지문제를 지역(마을) 내에서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복지 문제해결
- 복지마을을 원하는 지역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실시

(3) 사업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복지공동체 사업 욕구가 있는 대상
- 사업내용 : 복지공동체 마을관련 컨설팅 및 마을만들기팀 사업참여
  ※ 2015 제주시 읍면동 자원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제주시 마을만들기팀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마을만들기 추진팀 연계 활동 진행 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 실무전문가 활동 참가중
  - 2015년도 월1회 참여 활동 및 중간 컨설팅 등 참여
  - (마을만들기팀) : 소규모 공동체 주민모임 ~ 리단위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진행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재원 활용 등 연계협력 추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2015년	2016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복지마을 참여수	1	3	복지마을공동체 사업참여	결과보고서	내부문서 (마을만들기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A)	2016(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	3	200(증)
사업비 (백만원)	계	10	0	100(감)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기금 (기금명:)			
	지방비	10	0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마을만들기팀 실무전문가 회의참석	12	매월 (마을만들기팀 일정 협조)
주민복지과	모니터링	2	상, 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자원관리계)	계장	김미숙 (복지6급)	전화번호	064) 728-2471
		담당	성현숙 (복지6급)		064) 728-2472

5.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방안

(1) 사회복지업무 담당 조직 및 공무원 현황

구분	합계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직등 타직렬
총 계	205	141	사회복지직					
			3	19	55	48	16	64
본청소계	93	50	1	10	14	20	5	43
기획예산과	1	1	0	0	1	0	0	
주민복지과	19	10		4	3	2	1	9
경로장애인복지과	17	4			1	2	1	13
기초생활보장과	34	26	1	3	6	13	3	8
여성가족과	20	7		3	2	2		13
건축행정과	2	2			1	1		
읍면동 소계	95	74	0	7	34	23	10	21
한림읍	5	5		1	1	2	1	
애월읍	4	4		1	1	2		
구좌읍	5	3				2	1	2
조천읍	4	4		1	2	1		
한경면	4	3		1	2			1
추자면	3	1			1			2
우도면	2	1				1		1
일도1동	2	2			1		1	
일도2동	6	3			2		1	3
이도1동	2	2			1	1		
이도2동	8	6			1	3	2	2
삼도1동	3	2				2		1
삼도2동	2	2			2			
용담1동	2	2			2			
용담2동	4	4		1	2		1	
건입동	4	2			1	1		2
화북동	5	3			1	1	1	2
삼양동	4	3			1	2		1
봉개동	2	2			1	1		
아라동	4	3			2	1		1
오라동	2	2			2			
연동	6	4		1	3			2
노형동	5	5		1	2		2	
외도동	3	2			2			1
이호동	2	2				2		
도두동	2	2			1	1		
별도정원 (휴직 등)	17	17	2	2	7	5	1	

○ 제주시 사회복지공무원 현황 : 205명 (사회복지직 141명, 기타 64명)

- 본청 : 93명(사회복지직 50명, 행정직 등 43명)
- 읍면동 : 95명(사회복지직 74명, 행정직 등 21명)
- 휴직 등 결원 : 사회복지직 17명 (장기교육3명, 휴직12명, 공로연수1명, 도파견1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계획과 연동 반영함

(2) 확충계획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 2016년 상반기(5월) 4명 『제3기 기본계획에 의거』

※ 제주특별자치도 채용계획과 연계

(3) 맞춤형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시범 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운영

○ 운영배경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력조정 등 필요

- 상반기 신설 : 한림읍·이도이동 직원 추가배치 및 인력재조정 팀별 3명
  -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위한 팀장(복지직) 신설 및 배치(직급간 인력조정)
  - 2016년 상반기 행정직 2명 우선 배치(2016.1.13 인사발령완료)
  - 인력조정 (안)

구 분	현재(주민생활지원계)					증원(조정)계획 (맞춤형 복지팀)					비 고
	계	6급	7급	8급	9급	계	6급	7급	8급	9급	
이도이동	8	1 (보건)	2 (행1)	3	2 (시간제)	3	1	1	1	-	6급1명 증 직원은 동직원 조정
한림읍	5	1	1	2	1	3	1	1	-	1	6급1명 증 직원 1명 타 읍면동 인력 조정

  -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추진 : 이도이동 (예산 : 26,000천원)
- 하반기 신설 : 애월읍, 구좌읍, 일도1동, 일도2동, 화북동, 용담2동
  - 2015년 신규복지공무원 배치부서 6개 읍·면·동에 사례관리전담공무원 배치
  - 사례관리 전담 담당 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추진

(4)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타직렬 공무원 복지부서 근무 우대

- 2년이상 복지업무담당 행정직 등에 대하여 장기재직가산금(월3만원) 지원
- 상시학습 시 복지 관련 연간 교육4시간이상 이수 의무화
- 복지분야 근무공무원 전보제한 강화 (1년6개월 → 2년) 및 평점 가산점 부여

(5) 일선행정기관 간부 및 중간관리자 복지교육 이수제 시행

- 일선 행정기관 (읍면동장) : 복지교육 이수제 시행
- 행정기관 + 사회복지관련 중간관리자 : 복지교육 이수 필수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 사회복지관련 교육과정 추가신설 요청
(중간관리자를 위한 사회복지일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상담기법 등)

(6) 사회복지 업무 효율화 추진을 위한 복지 업무 매뉴얼 시행

- 선별적 복지 및 보편적 복지업무 관련 매뉴얼 제작 배부
- 복지유형에 따른 복지직 + 행정직 업무 분담 권고

(7) 읍면동 일반 제증명 등 민원 처리 간소화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설치대수 : 28대(시본청2/공공기관9/읍면사무소8/동사무소7/ 공항, 버스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추가설치)
- 대상 : 미설치 읍면동 및 다중 이용장소 등 무인발급기 확대 및 기계교체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민관협력 추진 강화

- 2015년 26개 읍면동 복지위원 301명 → 2016년 400명이상으로 확대(지역별15명이상)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전문화교육 추진으로 역할인지 부여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위원 위촉 확대로 복지서비스 활동 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발굴과 서비스연계 등

(2)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리장, 통장, 반장 등 복지 역할 부여

- 내용 : 지역주민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민간자원인 통장, 리장을 활용
- 관련조례 개정 건의 :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개정 건의 (임명자격 및 절차) 개정 요청
- 개정내용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협력 기능부여

(3)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 26 개소 운영

- 대상 :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내용 : 민원고충 상담 후 관련부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연계 각종 복지 관련 제증명 발급, 수화 서비스 제공
- 방법 : 사회복지공무원 중 6~7급 공무원 배치를 통한 서비스 극대화

3)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

(1)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회보장자원 및 인프라 확충

-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 실무협의체 구성현황

명 칭	위원장	위원수	구성 현황	임기
대표 협의체	김병립 전영록	26명	- 학계 : 3명 , 사회복지 : 16명 - 보건.의료 : 1명, 공공 : 4명 - 기타연계기관 : 2명	2년 (2014.11.1.~ 2016.10.31.)
실무 협의체	김성건	33명	- 사회복지 : 15명 , 학계 및 연구기관 : 2명 - 공공위원 : 9명, 교육 : 1명 - 보건.의료 : 3명, 기타연계 : 2명 - 경제 : 1명	2년 (2015.10.16.~ 2017.10.15.)

- 실무분과 구성현황

구 분	합계	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가족	장애인	노인	지역 사회	자활 고용	기획 총괄	통합 사례	보건 의료
위원수	138	13	16	14	15	17	14	9	11	21	8

(2)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실무·실무분과 위원을 문화, 고용, 교육부문 등의 확충을 통한 사회보장관련자원 및 인프라 구축

(실무분과 138명 → 150여명으로 확대운영)

(3)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市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를 통한 활성화

-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활동 교육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 복지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컨설팅”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 추진 ※ 예산 : 5,000천원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총괄 협의체 구성 : 26개 읍·면·동 위원장 및 간사 등 참여한 워크숍 등 추진 : 년2회
- 읍면동협의체 대표를 선임하여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및 실무협의체 운영참여 : 2016년 상반기 중 참여추진

(4)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추진
- 취약계층 아동 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 주요내용 : 시설별 다른 급여, 직급체계를 단일체계로 일원화
· 단계별 보수현실화 : 2016년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의 93% 보장
· 연도별 보수현실화 목표 : 2015년(90%), 2016년(93%), 2017년(96%), 2018년(100%)
· 2015년 3급기준 1인 /월 1,471천원지원→ 2016년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기준표적용 ※ 예산 : 제주시 자체재원 100%

- 인상급액 및 인상률
· 시설장(인상액 : 월710천원)기존대비48%, 생활복지사(인상액:월161천원)10%인상

- 제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계획

구분	2015년	2016년	비고
예 산 (천원)	355,292	745,890 (전년대비47.63%인상)	. 급여 : 682,890천원 . 가족수당 : 63,000천원
지원인원	지역아동센터42개소/93명 (시설장 42명, 생활복지사51명)	지역아동센터42개소/93명 (시설장 42명, 생활복지사 51명)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1) 세출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분 야 별	2016년 본예산	%	2015 본예산	%	증 감	%	비 고
계	1,063,146	100.0	968,611	100.0	94,536	9.8	
일반공공행 정	90,398	8.5	65,808	6.8	24,590	37.4	
공공질서 및 안전	64,821	6.1	70,180	7.2	△5,359	△7.6	
교 육	359	0.0	209	0.0	149	71.2	
문화 및 관광	51,652	4.9	38,243	3.9	13,409	35.1	
환경보호	55,034	5.2	30,260	3.1	24,775	81.9	
사회복지	411,258	38.7	387,068	40.0	24,190	6.2	
보 건	18,920	1.8	13,565	1.4	5,356	39.5	
농림해양 수산	121,870	11.5	137,673	14.2	△15,803	△11.5	
산업·중소기업	8,793	0.8	10,269	1.1	△1,475	△14.4	
수송및교통	44,178	4.2	33,780	3.5	10,398	30.8	
국토 및 지역개발	53,778	5.1	46,340	4.8	7,439	16.1	
기 타	142,084	13.4	135,216	14.0	6,868	5.1	

※ 2016년 본예산 재정계획 기준 작성

(2) 사회복지예산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년 도		2016년	구성비	비고
제주시 전체예산		1,063,146	100%	
합계		411,258	38.7%	
주민생활 지원국	소계	398,808	37.5%	
	주민복지과	30,431	2.86%	
	경로장애인복지과	159,040	14.96%	
	기초생활보장과	47,688	4.49%	
	여성가족과	160,831	15.1%	
	위생관리과	818	0.08%	
농수축산경제국	지역경제과	1,860	0.17%	취약층 일자리 추진 사업
도시건설교통국	건축행정과	10,590	1%	주거(임대)복지사업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붙임 참조)

(1) 외부 통계수집

- 호남(제주)통계사무소와 연계하여 사회보장지표에 관련한 통계자료 등 수집
- 교육청, 건강보험통계자료, 국민연금 통계자료 등 외부자료 연계협력수집

(2) 내부 통계수집

- 제주시 사회복지 일반 통계자료 및 일반현황자료, 주민등록 통계 자료 등은 매년말 해당실과 통계자료를 수집 하여 활용

(3) 통계수집자료 관리방안

- 매년 사회보장관련 통계자료 DB 전자화로 누계 관리 추진(전담부서지정)

6.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자체 평가계획

1) 평가주체

○ 평가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학의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민관 실무자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해당분과별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에서 전 분야에 거쳐 종합적인 평가 실시

○ 참여성, 통합성, 협력성을 기반으로 이원적 평가 진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	⇩
◆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 ◆ 관련부서장 ◆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담당자 ◆ 분과회의 모니터링 결과반영	심의 기능 수행

※ 보건복지부의 당해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매뉴얼』에 준하여 평가함

2) 평가내용 및 방법

(1) 평가내용

○ 시행계획 수립분야

평가영역	지표
A. 계획연계와 환경변화 대응	A1 계획의 연계성
	A2 환경변화 대응성
B. 참여와 협력	B1 심의여부 및 과정의 적절성
	B2 의견수렴정도
	B3 민관협력정도

○ 핵심과제, 세부사업 시행결과

평가영역	A. 추진과정			B. 목적 달성과 참여.협력		
지표	A1 투입의 적절성	A2 활동의 적절성	A3 산출의 적절성	B1 목적 달성 정도	B2 의견수렴 정도	B3 민관협력 정도

○ 세부사업별 발전 방향
- 시행과정상 문제, 핵심문제, 발전방향 등 제시내용 구술사항 평가

(2) 평가방법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총괄 평가는 4년 주기로 하되 이는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연차별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에 대해 평가

○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는 상반기추진실적을 7~8월 중 점검하는 중간모니터링과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을 익년도 1~2월 점검하는 최종평가로 운영

3) 평가시기 및 과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주시장은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최종 평가 시기는 1월말 또는 2월 초에 실시

○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첫째,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행 내용에 관한 자료수집, 점검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담당자가 평가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을 수행하며, 이 때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 지역보장협의체 관계자의 협력을 필요

둘째,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한 시행결과 평가

셋째, 시행결과 및 평가보고 작성 및 제출 : 시 담당자가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시행결과 및 지역보장협의체의 평가 결과에 의거함

4) 평가결과 활용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행결과의 평가내용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과정에 반영하여 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수정·보완

○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에 환류 하여 사업수행에 반영

○ 평가결과가 좋지 않는 사업 및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 부진 이유를 규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 우선배정 등에 적극 활용

별첨. 지역사회보장지표

1) 여건지표

2) 핵심지표 중 영향지표

지역사회보장 수준 파악을 위한 통계 제출 양식

1) 여건지표

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값		미제출 사유	비고
			2014년	2015년		
돌봄(아동)	1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890	875		여성가족과
	2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특수 어린이집 정원	625	642		여성가족과
	3	영유아 인구 천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	910	897		여성가족과
	4	취학전 아동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225	241		
	5	초등 돌봄교실 설치 학급수 및 이용 아동수	121/395 (30.6%) 2562/9727 (26.3%)	1129/406 (32.9%) 3042/9900 (30.7%)		제주시 교육청 (도교육청 교육통계자료)
	6*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84.2%	93.6%		주민복지과 사회서비스
	7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 (설치 개소수, 지원액)	42 2,463	43 2,506		아동드림스타트 (단위: 백만원)
돌봄(성인)	8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2,998	3,047		성인돌봄인구수 (2급이상 등록장애인수)
	9	노인돌봄 욕구	2,879	3,082		노인돌봄인구수
보호안전	10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	-		행정시 조례제정권 없음
	11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12	13		피해여성시설수 (여성가족과)
	12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 총 정원 수	73	83		피해여성시설 (여성가족과)
건강	13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61.5	60.8		보건복지부 회신자료
	14	만성질환자 비율	14.4	14.4		보건복지부 회신자료
	15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4,172	4,248		보건복지부 회신자료
교육	16	단위인구당 평생교육기관 수	0.52	0.42		도 교육청
	17	단위 인구당 학교 수	(초) 21.77	(초) 22.27		- 학교수에 분교장 불포함 - 출처 : · 인구수 : 도청 홈페이지 통계자료(매년 12월 기준) / 학교수 : 제주교육통계연보(매년 4.1.기준)/도교육청
			(중) 16.18	(중) 17.93		
			(고) 10.49	(고) 10.34		
			(전체) 17.09	(전체)17.68		
	18	특수교육대상자 수			지역별 데이터산정 어려움	도교육청
고용	19*	고용률	64.7%	67.9%		호남통계사무소 *출처 :kosis

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값		미제출 사유	비고
			2014년	2015년		
	20*	장애인고용률			산출 값 불가	
	21*	실업률	2.0%	1.9%		호남통계사무소 *출처 :kosis
주거	22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6.44%	미산출	미확정	건축행정과 *출처 :kosis
	23	인구 1천명당 주택수	308,370	미산출	미확정	건축행정과 *출처 kosis
	24	주택보급률	구주택:130.7% 신주택 111%	미산출	미확정	건축행정과 *출처 :kosis
	25	지가 점유율	56.22%	미산출	미확정	건축행정과 *출처 :kosis
문화여가	26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11.52	11.22		**공원녹지과** (조성중인 공원포함)
	27*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관 수 (신규조사 필요)		24		문화예술과
	28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17,037		문화에술과 스크린수 27
	29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	-	전용체육관 현황없음	
	30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 좌석 유무	2	2		문회에술과
환경	3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인1일/ 1.46kg	1인1일/ 1.73kg		녹색환경과
	32	주민 1인당 녹지조성 면적	0.82	0.88		**공원녹지과** (조성중인 공원포함)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33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비율	0.031	0.035		기초생활보장과
	34	차상위 수급자 비율	0.028	0.024		기초생활보장과
	35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38.96	38.37		기획감사실 (단위: 백만원)
	36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30.98	30.48		총무과

※ 6, 19, 20, 21, 27번 지표는 통계자료 생산시 신규조사 또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를 산출하는 지표로, 지자체에 따라 자료 작성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또는 생략하기시 바람.

2) 핵심지표 중 영향지표(19개)

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값		미제출 사유	비고
			2014년	2015년		
돌봄 (아동)	1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85%	88%		
보호 안전	2	학대/폭력 사례수			근거 통계없음	
	3	재학대 판정률			근거 통계없음	
건강	4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근거 통계없음	
	5	기대 여명			근거 통계없음	
	6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근거 통계없음	
교육	7	평생학습 참여율	0.05	0.07		도 교육청
	8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3,7	4.6		-도교육청 -학교ㅓ알리미
	9	초중고 학업 중단율	(초)0.07		'15년도 학년도 미종료 자료제공 불가	-출처:제주교육통계
			(중)0.30			
			(고)0.61			
			(전체)0.28			
고용	10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률	17,73	22,772		제주시자할
	11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데이터 산정불기	
주거	12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데이터 산정불기	
	13	강제이동 비율			데이터 산정불기	
환경	14	환경성 질환자 수			데이터 산정불기	
	15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데이터 산정불기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16*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데이터 산정불기	
	17*	빈곤인구 감소율			데이터 산정불기	
	18*	상대적 빈곤율		0.024		기초생활보장과
	19*	소득 5분위 배율			데이터 산정불기	

※ 16~19번 지표는 통계자료 생산시 신규조사 또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를 산출하는 지표들입니다. 지자체에서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